

2026년(63회) 변리사 1차시험 대비

# 디자인보호법 기본강의

## 보충교재

구 성		
1	디자인보호법 - 2025. 11. 28. 시행	1p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2024. 8. 7. 시행	36p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2025. 2. 12. 시행	40p
4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주요 별표&별지 서류	58p
5	한 별의 물품의 구분(구성물품)	96p
6	진도별 주요 대법원 판례	110p
7	진도별 주요 1차 기출 문제	168p

월비스 변리사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변리사 김 응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62호, 2025. 5. 27., 일부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畫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화상은 제외한다)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수출·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共有)한다.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7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디자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디자인권의 포기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5. 복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권의 증명)**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업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제11조(개별대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 또는 제132조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리인이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신청의 취하
3. 청구의 취하
4.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의 신청
5.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서 대리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4절을 준용한다.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勤勞者の날制定에관한法律」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제58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1.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60조에 따른 재심청구의 기간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제21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절차의 중단)**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특허청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 ⑥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 ② 당사자에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제외자인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제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4. 17.>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

려야 한다.

-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디자인등록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70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통지등의 종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을 한 후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디자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0.>

② 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6. 20.>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3. 21.>

② 삭제 <2023. 6. 20.>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이하 “물품류”라 한다)
4.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여부
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7.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여부
8. 디자인의 수 및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51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7.>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3. 디자인의 일련번호(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2항의 도면을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류 구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자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3. 도면·사진 또는 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도면에 적힌 사항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이 조에서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본다. 다만,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 ⑤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제42조(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별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별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별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10. 19., 2023. 6. 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
3. 제120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부터 30일 이내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0. 19.>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디자인등록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0.>

③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19., 2023. 6. 20.>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9., 2023. 6. 20.>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33조 및 제46조를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제1호의 서류 또는 제2호의 서면을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면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 3. 21.>

1.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
2.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⑥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3. 6. 20.>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

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53조(출원공개 효과)**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가 있는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118조 또는 「민법」 제760조·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제1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제5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특허청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제46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3장 심사

**제58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디자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의 의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허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관하여 제55조에 따른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7.>

⑥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7.>

**제63조(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20.>

**제66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이하 “직권 재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 제37조제4항,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

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6. 20., 2025. 5. 27.>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표시
4.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지
5.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분(副本)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70조(심사·결정의 합의체)**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결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71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제73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합의체는 제68조제3항 및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의신청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예외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78조(준용규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 제129조,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 제142조제7항, 제145조, 제1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54조를 준용한다.

####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 등

**제79조(디자인등록료)**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填)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하 “보전기간”이라 한다)에 등

료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내지 아니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5조(수수료)**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에 관한 등록료 및 수수료

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2016. 1. 27., 2021. 8.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8. 17.>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 1. 27., 2021. 8. 17.>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3.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디자인등록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분할출원 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

나. 제61조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 다. 심사관이 제63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제65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정 또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심판청구가 제128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43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 10. 18.>

**제88조(디자인등록원부)** ①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디자인권의 설정·이전·소멸·회복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7.>

## 제5장 디자인권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92조(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디자인권이 그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②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3조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제96조(디자인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7.]

**제9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제98조(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1. 디자인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3.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9조(통상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③ 제123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그 통상실시권자의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과 함께 이전되고 해당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된다.
- ④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이전할 수 없다.
- ⑤ 제3항 외의 통상실시권은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⑥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7.]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제100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
- 2.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3.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등록디자인 중 그 하나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의 원(原) 디자인권자

2.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한 경우의 원디자인권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해당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등록을 받은 자

2. 제104조제2항에 해당하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05조(디자인권의 포기)**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제106조(디자인권 등의 포기의 제한)** ①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제99조제1항 또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및 제97조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제108조(질권)** 디자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09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이나 등록디자인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품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상금 등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110조(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권자(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111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 ① 디자인권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은 소멸된다. <개정 2021. 10. 19.>

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 <신설 2021. 10. 19.>

[제목개정 2021. 10. 19.]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보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디자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3.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
4.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의 내용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14조(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그 물건의 양도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2.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③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⑥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8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장 심판

**제119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2025. 5. 27.>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디자인등록된 후 그 디자인권자가 제27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권리범위 확인심판)**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①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를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8조제4항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까지”로 보고, 제49조제3항 중 “제119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로, “그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심판절차에서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5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①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디자인권에 관하여 제121조제1항의 디자인등록무효심판 또는 제122조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인이나 제3항에 따른 피청구인 중 1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25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26조(심판청구방식)** ① 제121조부터 제123조까지에 따라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통상 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디자인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22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디자인을 말한다)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 ③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제12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명칭 및 특허나 등록의 연월일
  3.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 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제128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심판청구서가 제126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127조제1항에 위반된 경우
  2. 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 나. 제85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 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 ②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2023. 9. 14.>

⑤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⑦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

⑧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9. 14.>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9. 14.>

[제목개정 2022. 2. 3.]

**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제130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31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3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4조(답변서 제출 등)** ①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청구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135조(심판관의 제척)**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 관여로부터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제136조(제척신청)** 제135조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제척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39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①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그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1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5조 또는 제13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2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조서는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제142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14.]

**제143조(참가)** ① 제125조제2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그 심판의 청구를 취하한 후에도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③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보조하기 위하여 그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참가인은 모든 심판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가인에게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44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① 심판에 참가하려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판장은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가신청서 부분을 당사자 및 다른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제145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의 결정을 하거나 구인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6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6조의2(적시제출주의)**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47조(직권심리)**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148조(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심판관은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같은 2 이상의 심판에 대하여 심리 또는 심결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149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에 따른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0조(심결)** ①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써 종결한다.  
②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으면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의 주문(제123조의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 심결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 심결연월일

③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리종결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⑥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인 및 심판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1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2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디자인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2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153조(심판비용)** ① 제121조제1항 및 제122조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9조·제120조 또는 제123조의 심판비용은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금액·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4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밝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3조를 준용한다.

**제159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무효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16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① 제1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서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 목적 및 디자인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재심의 심결이 확정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4조(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5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6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 및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3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⑥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 ⑦ 제15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53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167조(피고격)** 제166조제1항에 따른 소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보 송부)**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보를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6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제170조(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심결·결정을 받은 자가 그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1조(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제170조에 따른 소송에서 제123조제3항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72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제173조(국제출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

**제175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헤이그협정의 특정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말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1.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의 취지
2.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 주소가 서로 다르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을 주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3. 제174조 각 호에 관한 사항
4. 디자인을 보호받으려는 국가(헤이그협정 제1조(xii)에 따른 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5. 도면(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7. 헤이그협정 제5조(1)(vi)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출원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2. 도면 또는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설명
3. 디자인권의 청구범위

**제176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국제출원서,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7조(기재사항의 확인 등)** 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x x viii)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 사본을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인”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장에서 “대체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국제출원의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3.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국제출원인(대리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과 연락을 하기 위한 주소 등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한 경우
5. 도면 또는 견본이 없는 경우
6. 지정국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체서류가 특허청장에게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로 본다.

**제178조(송달료의 납부)** ①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 및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 보내는 데에 필요한 금액(이하 “송달료”라 한다)을 특허청장에게 내야 한다.

② 송달료, 그 납부방법·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27.>

**제182조(출원일 인정 등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3조(국제등록의 소멸로 인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취하 등)** ① 헤이그협정 제16조(1)(iv)에 따른 포기 및 같은 협정 제16조(1)(v)에 따른 감축 등 변경사항의 등재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며, 국제등록디자인권(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 또는 포기의 효력은 국제등록부에 해당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이 등재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184조(비밀디자인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5조(국제등록공개와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열람 등)** ① 특허청장은 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제등록공개와 연기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10조(5)(a)에 따른 비밀사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이하 이 절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의 진행을 목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2.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 제48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은 “도면의 기재사항”으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부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0.>

④ 제48조제5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87조(분할출원의 특례)** ① 제50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는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로 한다.

② 제50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48조제4항”은 “제18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8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51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일”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는 날”로 한다.

**제189조(출원공개와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제191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의 특례)** ① 제57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로 한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7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57조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2항 및 제5항”은 “제2항”으로 한다.

**제192조(우선심사의 특례)** 제61조제1항제1호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93조(거절결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제2호 중 제37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4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제6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로 한다.

**제195조(직권보정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5조의2(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또는 같은 협정 제7조(2)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정수수료 및 개별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나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99조(디자인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제201조(디자인권 등록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 포기,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허청장이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이전이 제96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8조제1항제1호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기,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③ 제98조제2항을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경정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는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5조(서류의 열람 등의 특례)** 제206조제2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에 따라 출원 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로 한다.

**제10장 보칙**

**제2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디자인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7조(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 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7., 2024. 2. 6.>  
 1.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 1의2.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 ②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디자인 등록여부결정·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208조 삭제** <2024. 2. 6.>

**제209조(서류의 송달)** 이 법에 규정된 서류의 송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0조(공시송달)** ①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시송달은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게 어느 때라도 교부한다는 뜻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 ③ 최초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디자인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12조(디자인공보)**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② 디자인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3조(서류의 제출 등)** 특허청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14조(디자인등록표시)**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디자인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215조(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제1호의 표시를 한 것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제216조(불복의 제한)** ①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등록취소결정, 심결, 심판청구나 재심청구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제217조(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

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그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1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2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았을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1장 벌칙

**제220조(침해죄)**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 6. 10.>

**제221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제224조(비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7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5조(비밀누설죄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헤이그협정 제11조에 따라 연기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이나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제4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85조제1항에 따라 비밀사본을 열람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도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제2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28조(물수 등)** ① 제2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20962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 및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08호, 2024. 8. 6., 타법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4. 2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9.>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9. 27., 2017. 12. 29., 2023. 12. 19., 2024. 7. 2., 2024. 8. 6.>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2023. 12. 19.>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2023. 12. 19.>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심판관 등의 자격)**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 ③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1.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2.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서 심사 또는 심판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3.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3. 30.>
- [제목개정 2021. 3. 30.]

**제9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자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裁定)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2. 19.>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3. 12. 19.>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 라. 법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 2.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 3.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 4. 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4808호, 2024. 8. 6.>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9호, 2025. 2. 12., 일부개정]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 심판청구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인, 그 밖에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6. 10. 4., 2021. 6. 10.>

**제4조(서류의 제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관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서류에 사용하는 언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외한 서류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어로 적은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1.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 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지정 기간연장신청, 우선권증명서류, 우선권증명서류 번역문 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
-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이 조에서 “해당 특허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면 그 대리인은 제6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그 대리인이 해당 특허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리사가 되기 전에 대리하던 사건에 대하여 해당 특허법인등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은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3.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하려는 경우
- ⑨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무효처분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괄위임)**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에게 포괄위임에 대하여 설명하고 포괄위임장에 포괄위임을 하려는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0.>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에 관한 등록(이하 “포괄위임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포괄위임을 받아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이 된 사항(이하 “포괄위임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1. 6. 10.>
1.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포괄위임장에 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2.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출원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포괄위임장의 전자적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출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 선정신고는 선정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인감 또는 서명을 등록한 경우(「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인감 또는 서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명령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4., 2021. 6. 10.>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서명에 대한 공증서 등 서명에 대한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에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 또는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보호하기로 대한민국과 약속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파리협약 동맹국 중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면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

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따라 제출 서류명 및 제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이 법 제179조에 따라 본인의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2017. 9. 22.>

1. 출원인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4. 우선심사신청인
5.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6. 재심사청구인
7. 심판청구인, 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8. 디자인권자
9.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10. 질권자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③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서명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④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⑦ 제6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특허고객번호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제목개정 2016. 10. 4.]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19. 9. 24.>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
3. 삭제 <2020. 7. 1.>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해

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특허고객번호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개정 2016. 10. 4., 2021. 6. 10.>

1. 삭제 <2021. 6. 10.>
2. 삭제 <2021. 6. 10.>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 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미리 공지한 경우에는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해당 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온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 및 제6항, 법 제9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대상 서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신고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4.>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경우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36조제1항 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적음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력)**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37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재심사의 청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심판 등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 2017. 9.

22., 2018. 10. 18.>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 가. 법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 나. 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 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5. 제3조를 위반하여 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변경신청, 철회)서,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9.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10. 한글로 적지 아니한 경우
11. 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나 그 밖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한 경우
12.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디자인의 수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출한 도면이 별지 제1호서식의 기재방법 제8호바목,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2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재방법 제18호아목부터 차목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재방법 제4호다목 및 라목, 별지 제8호서식의 기재방법 제9호사목에 따른 파일 형식이나 용량을 위반한 경우
1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15.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16. 해당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7.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8.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9.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8.>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 내에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으면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제25조(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 디자인권을 등록받거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필요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① 법 제47조, 제48조, 제64조, 제128조, 제186조 또는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보정[「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하여 제네바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을 말하며, 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47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27조(물건제출서)** ①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제29조(기간의 지정 및 연장)** ① 법 제38조제2항, 제47조, 제128조제1항, 제177조제2항 또는 제178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 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2. 19.>

⑤ 법 제16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30조(기간 경과 구제신청)**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원에 관한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이 지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受繼) 또는 수계신청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절차 수계(수계신청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제33조(포기 또는 취하)** ①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 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장 디자인등록출원

**제34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제출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서류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 답변서 또는 소명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 또는 절차보완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

[전문개정 2019. 9. 24.]

**제35조(디자인등록출원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이나 사진 또는 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다만, 글자체 디자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면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은 별표 1과 같다.
-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적고, 같은 도면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는다.

**제36조(도면을 갈음한 사진 또는 견본의 제출)**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도면을 갈음하여 제출하는 견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견본 1개와 그 견본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제출할 것
  2. 견본의 규격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얇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합을 2백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견본은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할 것
  4. 견본은 취급 또는 보존이 쉬울 것
  5. 견본을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우려가 없을 것

**제37조(출원의 보완)**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절차보완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물품류 구분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물품류 구분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협정」(이하 “로카르노 협정”이라 한다) 제1조(3).(i)(제32류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9. 9. 24.>

- ② 제1항에 따른 각 물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물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에 속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0. 8. 28.>
- ④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제39조(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제출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디자인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적어야 한다.
-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간 단축(연장)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
  2. 디자인등록출원일
  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해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이하 “접근코드”라 한다)로서 특허청장이 부여하는 접근코드
- [전문개정 2020. 8. 28.]

**제4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한다)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2조 삭제** <2025. 2. 12.>

**제43조(협의 결과의 신고)**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을 정하여 신고하려는 자 또는 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하나의 디자인출원인을 정하여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경합(競合)하는 자 모두가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경합된 출원 또는 출원인변경신고에 대하여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제44조(보정의 각하결정)** 심사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보정의 각하결정서)** 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2.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5.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유한)[이하 “특허법인(유한)”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6.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각하결정연월일

**제46조(출원의 분할)** 법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하나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려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디자인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 1통

**제47조(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

라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심사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에 대한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④ 제3항에 따라 한글번역문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의 내용 중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은 한글번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⑤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한 접근코드를 말한다. <신설 2017. 9. 22., 2020. 8. 28.>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번호 및 접근코드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2.>

**제48조(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9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 제공)** 법 제55조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0조(창작자의 추가 등)**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창작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창작자를 추가할 수 없고 창작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창작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디자인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창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창작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디자인권자는 법 제90조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창작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창작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창작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디자인권자 및 신청 전·후 창작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2025. 2. 12.]

**제51조(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신고)**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② 같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5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한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
-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2조의2(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파리협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접근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8.>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또는 접근코드 부여의 신청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22.]

### 제3장 심사

**제53조(심사의 순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따른다.

**제54조(동일출원의 심사)**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55조(심사참고자료)**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6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7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8조(출원의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법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서 또는 디자인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디자인등록출원번호(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
4. 디자인의 일련번호(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거절이유통지연월일(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결정연월일

**제59조(거절이유 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② 법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71조 및 제124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0조(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재심사 청구)**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디자인등록공고일 및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① 디자인등록공고일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고되거나 공개된 취지를 게재한 법 제21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이하 “등록디자인공보”라 한다)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이하 “공개디자인공보”라 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디자인등록공고일로 본다.

**제6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2.>

1.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이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④ 법 제69조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을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제4장 디자인등록증 및 디자인권 등

**제63조(일부 디자인의 포기)**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별로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9.>

1.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여야 하

는 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1. 삭제 <2016. 4. 22.>

2. 삭제 <2016. 4. 22.>

**제65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디자인권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증(이하 “디자인등록증등”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② 특허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증등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한 후,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6조(신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96조에 따른 이전 등의 사유로 디자인권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제1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6. 28.>

1.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5호서식까지의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2.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3.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급한 디자인등록증등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6서식,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등록사항란으로 한정한다)에 그 정정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67조(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 특허청장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68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발급(재발급)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의 경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 재발급 신청의 취지를 적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1., 2018. 6. 28.>

1. 제66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2. 제6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의 발급신청

3. 제6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증등의 재발급신청

② 디자인등록증등,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휴대용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디자인등록증등 또는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8. 6. 28.>

③ 영어 디자인등록증등 또는 휴대용 영어 디자인등록증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휴대용)외국어등록증 발급 신청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권자, 창작자 등 해당 디자인등록증등에 적어야 할 사항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목록 명칭으로 디자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12. 21.>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제69조(디자인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등록디자인공보 또는 공개디자인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비밀디자인등록 증명신청)**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증명 서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심판청구서)** ① 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0.>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73조(답변서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법 제144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증거의 첨부)** ①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심판청구서, 답변서, 의견서,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류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자료가 서류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분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구술심리)**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78조(심판참가 신청)** 법 제144조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 및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 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심리 재개)**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6. 결정연월일

**제84조(심판비용)** 법 제153조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비용액 결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계산서 및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5조(재심청구서)** 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6조(준용규정)** 법 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 제6장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제87조(국내에 거소가 있는 자)** 법 제174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자”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장소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기 위하여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2.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3조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특허청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국제출원의 방식 등)** ① 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서류 중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와 「헤이그 협정의 1999년 개정협정 및 1960년 개정협정에 따른 공통규칙」의 규칙7(4)(c)에 따라 특정 계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서류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30.>

1. 별지 제19호서식의 국제출원서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필요한 서류(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증명서류제출서(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제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발명자 선언서

나.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보호적격을 위한 정보진술서

다.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미국의 개별지정수수료 감면증명서

③ 법 제175조제2항제8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원인의 계약당사자

2. 디자인의 수 및 도면의 수

3. 국제등록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

4. 출원인의 서명

④ 법 제175조제3항에 따른 건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본의 수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건본 1개와 지정국 중 비밀사본을 받기를 원한다고 통지한 국가에 각각 제출할 건본의 수를 합한 것으로 할 것

2. 건본은 펼쳤을 때 가로 26.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50그램, 두께는 3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3. 건본을 제출하는 복수디자인 국제출원의 경우 각각의 건본들이 가로 21센티미터, 세로 29.7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용지에 부착되어야 하며,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것

4. 모든 건본은 하나의 포장에 담겨져야 하고, 건본의 포장은 어느 방향이든 그 크기가 30센티미터 이내이며, 무게는 4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제91조(국제출원서의 대체서류 제출)** ① 법 제177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보완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체서류”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대체서류가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제92조(국제출원의 보정)** ① 법 제173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 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47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1통
  2.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② 법 제47조제3호 및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여 수수료 및 송달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93조(국제출원의 취하)**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국제출원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제출원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경정)** 법 제203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법 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 제7장 보칙

**제95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206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電報)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발급이나 복사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19. 9. 24.>

1. 디자인등록원부 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등본(초본) 발급신청 및 디자인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열람(복사, 발급)신청서
  2.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및 심결문송달증명 신청: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증명신청서
-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 삭제 <2024. 8. 7.>

**제97조** 삭제 <2024. 8. 7.>

**제98조** 삭제 <2024. 8. 7.>

**제99조** 삭제 <2024. 8. 7.>

**제100조(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212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 광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1조(디자인등록 표시)** ① 법 제214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등록디자인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 표시
  2. 디자인등록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 표시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 8. 28.]

**제102조** 삭제 <2023. 12. 21.>

**부칙** <제599호, 2025.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작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창작자의 추가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쓰에  
편케하고자  
함이라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쓰에 편케하고자 함이라

뫼끼릭  
맷료콤  
으숯황

2. 영문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52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보기문장 도면】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대표글자 도면】

H a  
R e  
S g

3. 숫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1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1 2 3  
4 5 6

7 8 9  
0

【보기문장 도면】

1 2 3  
4 5 6  
7 8 9  
0

【대표글자 도면】

1 2  
5 6  
8 0

4. 특수기호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16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 . ; {  
[ ( ? !  
/ @ # \$  
% & \* W

【보기문장 도면】

, . ; {  
[ ( ? !  
/ @ # \$  
% & \* W

【대표글자 도면】

\* W  
? ;  
& {

5. 한자 글자체 도면: 지정글자 900자, 보기문장, 대표글자

【지정글자 도면 1】

街佳假價加可家歌各  
脚角干看問渴感敢減  
甘甲强江講降個改皆  
開客更去居巨舉車乾  
健堅犬見決潔結京庚  
慶敬景競經耕輕驚季  
溪界癸計鷄古告固故  
考苦高谷曲穀困坤骨  
公共功工空果科課過  
官觀關光廣交教校橋  
久九口句救求究舊國  
君軍郡弓勸卷權歸貴

【지정글자 도면 2】

均極勤根近今禁金及  
急給其基己幾技既期  
氣記起吉暖難南男乃  
內女年念怒農能多丹  
但單短端達談答堂當  
代大對待德刀到圖島  
度徒道都獨讀冬動同  
東桐童斗豆頭得燈登  
等樂落卵浪郎來冷兩  
涼良量旅力歷練連列  
烈令領例禮勞老路露  
綠論料柳流留六陸倫

【지정글자 도면 3】

律利李理異林立馬莫  
晚滿萬未亡忘忙望每  
買賣妹麥免勉眠面名  
命明鳴暮母毛木目卯  
妙務戊武無舞茂墨問  
文聞門勿物味尾未米  
美民密朴半反飯發房  
放方訪防拜杯白百番  
伐凡法變別丙兵病保  
報步伏復服福本奉逢  
部否夫婦富扶浮父北  
分不佛朋備悲比非飛

【지정글자 도면 4】

鼻貧氷事仕使史四士  
寺射已師思死私絲舍  
謝算山散産殺三上傷  
商喪尙常想相賞霜色  
生序暑書西夕席惜昔  
石仙先善線船選鮮舌  
設說雪城姓性成星盛  
省聖聲誠世勢歲洗稅  
細小少所消笑素俗續  
速孫松送修受壽守愁  
手授收數樹水秀雖須  
首誰叔宿淑純順戍崇

【지정글자 도면 5】

拾習乘勝承始市施是  
時示視試詩式植識食  
信新申神臣身辛失室  
實心深甚十氏兒我惡  
安案眼顏巖暗仰哀愛  
也夜野弱約若藥楊洋  
羊讓陽養於漁語魚億  
憶言嚴業余如汝與餘  
亦易逆然煙研悅熱炎  
葉榮永英迎藝五午吾  
悟烏誤屋玉溫瓦臥完  
曰往王外要欲浴勇容

【지정글자 도면 6】

用于又友右宇尤憂牛  
遇雨云運雲雄元原圓  
園怨遠願月位偉危威  
爲唯幼有柔油猶由遊  
遺西肉育恩銀乙吟陰  
音飲泣邑應依意矣義  
衣議醫二以已異移而  
耳益認人仁印因寅引  
忍一日壬入姉子字慈  
者自作昨場壯將章長  
哉在才材裁財再爭低  
著貯敵的赤適傳全典

【지정글자 도면 7】

前展戰田錢電節絕店  
接丁井停定庭情政正  
淨精貞靜頂帝弟祭第  
製諸除題兆助早朝祖  
調造烏族足存尊卒鐘  
宗從種終坐左罪主住  
宙晝朱注走酒竹中衆

【지정글자 도면 8】

泉淺鐵晴清聽請青體  
初招草寸村最推秋追  
丑祝春出充忠蟲取吹  
就治致齒則親七針快  
他打脫探太泰宅土統  
通退投特波破判八敗  
貝便片篇平閉布抱暴

重卽增曾證之只地志  
持指支枝止知紙至直  
盡眞辰進質執集且借  
次此着察參唱昌窓採  
菜冊責妻處尺千天川

【지정글자 도면 9】

好戶虎號湖或婚混紅  
化和火畫花華話貨患  
歡活皇黃回會孝效厚  
後訓休凶胸黑興喜希

【보기문장 도면】

天地之道一陰  
陽五行而已坤  
復之間爲太極  
而動靜之後爲  
陰陽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  
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

表品豐風彼皮匹必筆  
下何夏河賀學寒恨漢  
閑隈韓含恒亥害海解  
幸行鄉香向虛許革現  
賢血協兄刑形惠乎呼

【대표글자 도면】

王講示  
買道人  
永多武  
女明街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1. 물품에 대한 설명: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전기스탠드로 뒷면에 음이온 발생장치를 갖추고 있음. 재질은 갓 부분은 표면이 매끈한 유리 재질이고, 몸체 부분은 구형(球形) 돌기가 형성된 철재이며, 전체 크기는 50cm임.

2. 도면에 대한 설명: 도면(사진 또는 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별 설명

(예문) 도면 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이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뒷면은 앞면과 같고, 도면 3은 이 디자인의 윗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4는 이 디자인의 아래쪽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5의 A부터 A'까지 부분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3. 도면에서 길이 표시 생략에 대한 설명: 도면에서 길이 표시를 생략하여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이 명확하지 않아 생략한 길이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면상 몇 mm, 몇 cm 또는 몇 m가 생략되었음을 표시

(예문) 도면 1에서 표현된 디자인의 도면상 생략된 길이는 5cm임.

4. 도면의 색채에 대한 설명: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입히는 경우에 흰색·회색 또는 검은색 중 하나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도면 1에서 윗부분은 회색이고, 아랫부분은 검은색이며, 기둥 부분의 흰색은 생략하였음.

5. 투명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설명: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용기 내부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윗면의 덮개 부분이 투명 재질로 되어 있음.

6. 부분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물품의 부분을 도면이나 견본에서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주전자의 손잡이를 나타내는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으려는 부분임.

7.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예문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8.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에 대한 설명: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만을 제출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디스플레이 패널에 나타나는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며 화면이 도시되는 부분 이외의 도면은 생략하였음.

9. 열리고 닫히는 디자인 또는 펼쳐지고 접히는 등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하여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변화 전후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자동차 뒤쪽의 스포일러 부분이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펼쳐진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이며,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접힌 상태를 보여주는 도면임.

10.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에 대한 설명: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그 움직이는 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 상태, 동작 상태(동작 중의 기본적 자세, 동작 내용을 나타내는 궤적 등)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움직이는 "로봇완구"의 디자인으로서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정지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며,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움직이는 연속 동작을 나타내는 일련의 도면임.

11. 토목건축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반복생산성,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

(예문1) 이 디자인은 가옥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미리 생산·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예문2) 이 디자인은 교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제로 제작·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12.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한 짝의 형태만을 도면으로 제출하고 나머지 한 짝을 생략하여 그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문) 이 디자인은 좌·우측 이어폰이 한 세트로 구성된 블루투스 이어폰의 한 쪽 이어폰을 나타낸 것으로, 다른 한 쪽 이어폰의 디자인은 이 디자인과 대칭임.

13.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의 디자인에 대한 설명: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형태를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마네킹 등의 보조적인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관한 설명

(예문) 이 디자인은 덧신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발에 썩은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해 마네킹을 사용한 것으로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것임.

비고: 디자인의 설명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합니다.

한 별의 물품의 구분(제38조제4항 관련)

1. 한 별의 여성용 한복 세트
2. 한 별의 남성용 한복 세트
3. 한 별의 여성용 속옷 세트
4. 한 별의 장신구 세트
5. 한 별의 컵스단추 및 넥타이핀 세트
6. 한 별의 흡연 용구 세트
7. 한 별의 침장 세트
8. 한 별의 커피 용구 세트
9. 한 별의 화채 용구 세트
10. 한 별의 반상기 세트
11. 한 별의 다기(茶器) 세트
12. 한 별의 양념용기 세트
13. 한 별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14. 한 별의 주기(酒器) 세트
15. 한 별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세트
16. 한 별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17. 한 별의 제기(祭器) 세트
18. 한 별의 세면 화장대 세트
19. 한 별의 책상과 책꽂이 세트
20. 한 별의 거실용 가구 세트
21. 한 별의 테이블 세트
22. 한 별의 사무용 가구 세트
23. 한 별의 응접 세트
24. 한 별의 탁자와 의자 세트
25. 한 별의 부엌가구 세트
26. 한 별의 서도용구(書道用具) 세트
27. 한 별의 필기구 세트
28. 한 별의 오디오 세트

29. 한 별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30. 한 별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 세트
31. 한 별의 문짚과 문설주 세트
32. 한 별의 화장실 청소용구 세트
33. 한 별의 세면용구 세트
34. 한 별의 전기칫솔 세트
35. 한 별의 캠핑용 식기 세트
36. 한 별의 자동차용 바닥매트 세트
37. 한 별의 야외용 테이블 및 의자 세트
38. 한 별의 자동차용 시트커버 세트
39. 한 별의 변기용 부속품 세트
40. 한 별의 골프클럽 세트
41. 한 별의 드럼 세트
42. 한 별의 사무용구 세트
43. 한 별의 자동차용 페달 세트
44. 한 별의 차량용 오디오 기기 세트
45. 한 별의 스피커 박스 세트
46. 한 별의 태권도복 세트
47. 한 별의 유도복 세트
48. 한 별의 검도복 세트
49. 한 별의 등산복 세트
50. 한 별의 스키복 세트
51. 한 별의 승마복 세트
52. 한 별의 야구복 세트
53. 한 별의 손톱·발톱 미용기구 세트
54. 한 별의 가방 세트
55. 한 별의 지갑 및 벨트 세트
56. 한 별의 화장용 브러시 세트
57. 한 별의 머리빗 세트
58. 한 별의 이발기구 세트
59. 한 별의 면도용구 세트
60. 한 별의 수유용품 세트

61. 한 벌의 출산 준비물 세트
62. 한 벌의 커튼 및 블라인드 세트
63. 한 벌의 트로피 · 상패 세트
64. 한 벌의 액자 세트
65. 한 벌의 정리용 수납상자 세트
66. 한 벌의 아이스박스 세트
67. 한 벌의 주방용 밀폐용기 세트
68. 한 벌의 와인잔 세트
69. 한 벌의 주방용 칼 세트
70.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 세트
71. 한 벌의 남자용 수의(壽衣) 세트
72. 한 벌의 여자용 수의 세트
73. 한 벌의 침실용 가구 세트
74. 한 벌의 가구용 손잡이 세트
75. 한 벌의 운동용 아령 및 역기 세트
76. 한 벌의 게임기 세트
77. 한 벌의 제도용구 세트
78. 한 벌의 스위치 및 콘센트 세트
79. 한 벌의 원예용구 세트
80. 한 벌의 수동공구 세트
81. 한 벌의 드라이버 세트
82. 한 벌의 손목시계 세트
83. 한 벌의 반창고 세트
84. 한 벌의 부항기 세트
85. 한 벌의 프라이팬 세트
86. 한 벌의 선박용 조타실(操舵室) 가구 세트
87. 한 벌의 선박용 침실 가구 세트
88. 한 벌의 선박용 휴게실 가구 세트
89. 한 벌의 선박용 선원식당 가구 세트
90. 한 벌의 자동차용 대시보드 패널(dashboard panel, center fascia) 세트
91. 한 벌의 레저자동차의 침실용 가구 세트
92. 한 벌의 주방용 붙박이(built-in) 물품 세트

93. 그 밖에 둘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디자인등록출원서

(앞쪽)

- 【출원 구분】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 【참조번호】 )

【출원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 【포괄위임등록번호】 )

(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기본디자인의 표시】 )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 【디자인의 일련번호】 )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

( 【디자인의 수】 )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국제등록일)】

【증명서류】  첨부  미첨부

【접근코드】 )

( 【그 밖의 사항】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디자인이전희망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출원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수수료】 (기재방법 제16호 참조)

【출원료】

개 디자인

원

(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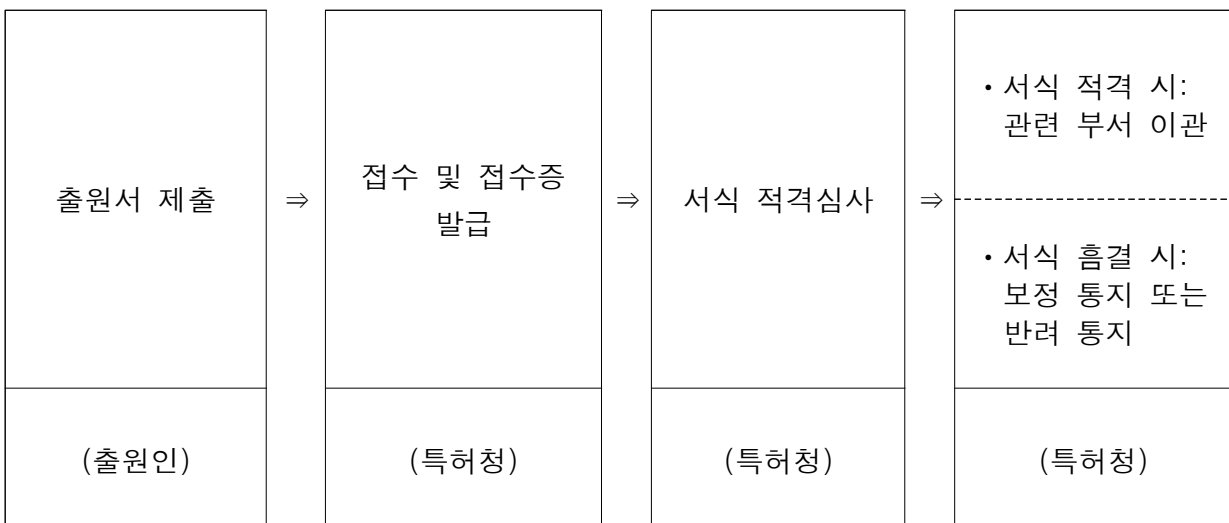
【첨부서류】 1. 도면(사진·견본) 1통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1통을 말합니다)

2.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방법 제18호 참조)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출원 구분	내용	관련 규정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8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일부심사등록 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제38조
디자인심사등록분할출원	1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분할출원	1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에 대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6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무권리자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1조

2. 처리절차



## ※ 기재방법

### 1. 【출원 구분】란

가. 출원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해당되는 물품류(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를 제외한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및 제19류의 물품류가 해당됩니다.

### 2. 【참조번호】란

동일한 제출인(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동시(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출원서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 예와 같이 【출원 구분】란의 다음 줄에 【참조번호】란을 만들어 제출매체(온라인, 이동식저장장치, 서면)에 따라 새로 시작되는 제출인별·권리별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출원 구분】

【참조번호】 01

### 3. 【출원인】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1)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제출인이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 출원인인 경우에는 【성명(명칭)】란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3) 제출인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된 심판사건의 제출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란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 사이에 한 칸 띄어쓰기하여 적고, 【성명(명칭)】란의 다음 줄에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란을 만들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제1조(viii)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같은 문자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 【제출인】

【성명(명칭)】 케네디 존 에프

【성명(명칭)의 영문 표기】 KENNEDY John F.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4)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1) 【출원인】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제출인의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및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등 필요한 난을 만들어 적습니다.

2) 출원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

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cm × 세로 4cm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출원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인 이상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수대로 【출원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합니다.

다. 공통

- 1)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출원과 동시에 대표자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출원인 대표자”와 같이 적으며, 【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2)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공동으로 출원하고 상호간에 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지분】란을 만들고 “출원인 지분 ○/□”과 같이 지분내용을 분수로 적고, 【첨부서류】란에 “지분약정서”라고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3)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특별히 약정한 경우,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을 한 경우 또는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그 밖의 사항】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어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 4)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출원인】란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출원인】  
      【법정대리인】  
      【성명】  
      【특허고객번호】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모두를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출원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5. 【원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

가.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원출원의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란에는 분할출원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번호나 국제등록번호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원출원의 출원번호】 30-2010-1234567

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경우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란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과 관련되는 무권리자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6.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란에는 해당 여부를 “단독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과 같이 적습니다.

7.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이 난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적으며, 【출원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란에는 기본디자인의 출원번호, 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참조번호 중 하나를 적고,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추가로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에 해당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가.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한 개의 복수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만을 적습니다.

나.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을 동시에 각각 별개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참조번호】 01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다. 기본디자인등록출원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출원번호】 30-2014-1234567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라. 기본디자인 설정등록(2014년 7월 1일 전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여 설정등록된 것만

해당합니다) 이후 관련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예] 【기본디자인의 표시】

【등록번호】 30-1234567-00-00

【디자인의 일련번호】 M08

마. 위의 기재방법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은 기본디자인이 1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에는 적을 필요가 없으며, 기본디자인이 복수디자인으로 출원되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그 기본디자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8.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

【기본디자인의 표시】란 다음 줄에 【1디자인, 복수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1디자인” 또는 “복수디자인”과 같이 그 구분을 명시합니다.

9. 【디자인의 수】란

가. 1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수를 적을 필요가 없으며, 복수디자인인 경우에만 디자인의 개수(최대 100개까지)를 적습니다.

나. 디자인의 개수가 두 개 이상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의 수】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순서대로 【물품류】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부분디자인 여부】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창작자】 및 ( 【우선권 주장】 )란을 디자인의 수만큼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은 부분디자인이고,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는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1】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부분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기본디자인의 표시】 )

【출원번호】

( 【디자인의 일련번호】 )

【창작자】

【성명】

【특허고객번호】

(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출원번호】

【출원일】

【증명서류】 )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2】

- 【물품류】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 ( 【기본디자인의 표시】 )
- 【출원번호】
- ( 【디자인의 일련번호】 )
- 【창작자】
- 【성명】
- 【특허고객번호】
- ( 【우선권 주장】
- 【출원국명】
- 【출원번호】
- 【출원일】
- 【증명서류】 )

10. 【물품류】 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물품류】 제1류

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류에 14류를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은 해당 물품류를 기재합니다.

1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고시에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 데 적합한 명칭으로서,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는 일반적인 명칭을 적습니다.

나.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명칭 중 한 개의 물품명을 적으며, 물품의 부분의 명칭(예: 커피잔의 손잡이)을 적어서는 안 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커피잔

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화상의 구체적인 용도(~용 화상)를 기재하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상디자인, 화상 등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법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라.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한 벌의 물품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12. 【부분디자인 여부】란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다음 줄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을 만들어 “부분디자인”이라고 적습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이 아닌 경우에는 이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13. 삭제 <2023. 12. 21.>

14. 【창작자】란

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 적은 국문 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출원인과 창작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출원인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 1) 【창작자】란에 창작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 【성명의 영문표기】 , ( 【주민등록번호】 ), 【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 2) 창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소】란의 다음 줄에 【국적】란을 만들어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고, ( 【주민등록번호】 )란은 삭제하며, 【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 3) 【창작자】란의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서식(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15. 【우선권 주장】란

【우선권 주장】란은 외국에 출원한 것으로서 최초에 출원한 【출원국명】 ,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적고, 우선권 주장 서류를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첨부”라고 적으며,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미첨부”라고 적습니다. 다만, 출원국명이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는 【증명서류】란에 실제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첨부”라고 적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접근코드를 적으려는 경우에는 【접근코드】란에 해당 접근코드를 적고 접근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지 않으며,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우선권 주장】

- 【출원국명】 US
- 【출원번호】 98-123456
- 【출원일】 1999. 07. 01.
- 【증명서류】 첨부
- 【접근코드】 4321

【우선권 주장】

- 【출원국명】 JP
- 【출원번호】 62-1234
- 【출원일】 1999. 08. 01.
- 【증명서류】 미첨부

16. 【그 밖의 사항】란

가. 다음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하는 사항의  안에 모두 표시(예: )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규정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	출원과 동시에 공개신청을 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52조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36조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획득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나.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는 경우

디자인비밀보장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 및 【청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고, 청구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3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그 기재방식은 “등록일부터 ○○개월”과 같이 적습니다.

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는 경우

출원과 동시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줄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및 【공개일】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첨부서류】란에는 주장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예]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공개형태】 간행물예의 발표

    【공개일】 2010. 07. 01.

라.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희망 사항의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이전대가】란을 만들고 희망하는 디자인이전 형태 및 대가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해당 사항에 표시(예: )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전을 희망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공개 또는 등록공고 후 디자인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에 디자인이전희망 디자인으로 등록됩니다.

[예] 【디자인이전희망】  양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예] 【디자인이전대가】  유상  무상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란의 다음 행에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 【과제관리(전문)기관명】 , 【연구사업명】 , 【연구과제명】 , 【과제수행기관명】 및 【연구기간】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과제고유번호】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부여하는 과제고유번호를 적습니다. 【과제번호】란은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과제별로 부여하는 세부과제번호를 적습니다. 【부처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과제관리(전문)기관명】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사업명】란은 연구과제가 포함된 상위 연구사업명(확실하지 않으면 연구과제계획서에 적은 상위 연구사업명)을 적습니다. 【연구과제명】란은 각 부처 또는 과제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부과제 단위의 연구과제명을 적습니다. 【과제수행기관명】란은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연구기간】란은 해당 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기간을 적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이 창작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로서 출원서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또한, 이 창작을 지원한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전인 경우에는 【과제고유번호】란에 "미부여"로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는 출원서 등의 보정을 통해 반드시 과제고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예】 【그 밖의 사항】

【이 디자인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 ○○○○○○○○○

【과제번호】 ○○○○○○○○○

【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

【과제관리(전문)기관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사업명】 미래선행디자인기술개발

【연구과제명】 스마트홈 환경 구현을 위한 지능형 감성제품 서비스 선행 디자인 개발

【과제수행기관명】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기간】 2019. 4. 1. ~ 2020. 12. 31.

17. 【수수료】란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1항을 참조하여 출원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명세 및 금액을 적습니다. 【출원료】란에는 디자인의 개수 및 출원료 금액을 적고, 아울러 출원공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란을, 디자인비밀보

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란을,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료】 란을 각각 만들어 각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 란을 만들어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수수료】

【출원료】	개 디자인	원
【디자인등록출원 공개신청료】		원
【디자인비밀보장 청구료】	개 디자인	원
【우선권 주장료】	개 디자인	원
【합계】		원

나.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 란의 【합계】 란의 다음 줄에 【감면(면제)사유】 및 【감면(면제)후 수수료】 란을 각각 만들어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 감면(면제)후 수수료를 적고, 감면 또는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번호로 하여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 1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19. 【첨부서류】 란

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나.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출원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다.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출원인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원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보  
훈번호: 000-000000]

라.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디자인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하는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한 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같은 날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디자인등록출원서

【출원번호】 30-2010-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36조제1항, 제5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만 해당합니다)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아래의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10-당-123456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으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 또는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480)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차. 도면을 전자적 이미지파일 또는 3차원 모델링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거나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1) 하나의 디자인 제출 시 파일 형식

디자인의 종류	출원 시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글자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참고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허용	
		폰트파일 제출 (TTF)	허용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 복수디자인의 제출 시 파일 형식

※ 복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파일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디자인의 종류	M001의 제출파일 형식		M002의 제출파일 형식		허용 여부
평면, 입체, 화상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3D모델링 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 파일과 3D모델링 파일의 혼합 제출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TIFF, JPEG,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3D모델링파일 제출 (IGES, OBJ, STEP, STL),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 파일과 3D모델링 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2D이미지 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3D모델링 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 파일, 3D모델링 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2D이미지파일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3D모델링파일	3D모델링 파일(IGES, OBJ, STEP, STL)	허용
			동영상파일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2D이미지파일과 3D모델링파일의 혼합 (TIFF, JPEG, IGES, OBJ, STEP, STL)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3D모델링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	2D이미지파일, 3D모델링파일 및 동영상파일 의 혼합(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혼합 제출 (TIFF, JPEG, IGES, OBJ, STEP, STL,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글자체디자인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2D이미지 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제출 (TIFF, JPEG, TTF)	⇒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불가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참고 도면	2D이미지파일 제출 (TIFF, JPEG), 폰트파일 제출 (TTF), 동영상파일 제출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 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제출 (TIFF, JPEG, TTF), 2D이미지 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폰트파일과 동영상 파일의 혼합 제출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 폰트 파일 및 동영상 파일의 혼합 제출 (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2D이미지파일(TIFF, JPEG)	허용
			폰트파일(TTF)	허용
			동영상파일(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 2D이미지파일과 폰트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허용
			2D이미지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폰트파일과 동영상파일의 혼합(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2D이미지파일, 폰트파일 및 동영상파일의 혼합(TIFF, JPEG, TTF, SWF, MPEG, WMV, Animated GIF, AVI)	허용

## 20.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출원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

인해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1.>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도면

(앞쪽)

(【디자인의 일련번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2025.11.28. 삭제 예정)

【도면 1】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5】

【도면 6】

【도면 7】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기재방법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보존용지(2종) 70g/m<sup>2</sup>]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위쪽 40mm, 왼쪽 25mm, 아래쪽 및 오른쪽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으며, 용지의 아래쪽 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 번호를 적습니다.

다. 도면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진한 먹물 또는 제도용 검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도시(圖示)하며, 연필, 잉크(제도용 검은색 제외), 크레파스 또는 그림물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산된 이미지파일(300dpi 이상의 해상도) 형식인 경우에도 위에 준하여 도시합니다. 다만,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 시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탕색을 무채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 도면 내에는 중심선, 기선(基線), 수평선 등을 표시하기 위한 세선(細線) 또는 내용의 설명을 하기 위한 지시선, 부호 또는 문자를 적어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음영을 넣을 경우에는 모양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선, 점 또는 농담(濃淡)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을 표시할 경우 절단된 부분에 해칭(연속된 빗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식별 항목의 기재

-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와 식별 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적으며, 식별 항목의 다음 줄에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2) 식별기호(【 】)는 식별 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도면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가로(횡)로 배치할 수 있으나, 도면 내용의 윗부분이 용지의 오른쪽이 되도록 배치하며, 【도면 ○】 식별항목은 가로(횡)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 4) 도면의 기재순서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와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도면을 우선순위로 하여 【도면 1】 , 【도면 2】 , 【도면 3】 … 순으로 적습니다.

그 이외에 디자인의 용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을 【참고도면 1】 , 【참고도면 2】 , 【참고도면 3】 … 순으로 식별 항목을 만들어 적되, 그 도면의 명칭은 다음 [예]와 같이 【참고도면 ○】 란의 다음 줄에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

사용상태도

해당 도면
내용

5) 디자인의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변화 전·후의 상태를 각각의 도면에 표현하는 경우 등)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에 영문자 대문자(A, B…순)를 적어서 구분하고, 【디자인의 설명】란에 통상적인 디자인의 설명을 먼저 한 후에, “변화 전 상태의 도면은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이며,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은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구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출원은 여러 벌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라도 각 도면의 식별 항목명을 영문자 대문자로 구분하지 않고 4)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A 1】

【도면A 2】

【도면A 3】

【도면A 4】

【도면A 5】

【도면A 6】

【도면A 7】

【참고도면A 1】

【참고도면A 2】

【도면B 1】

【도면B 2】

【도면B 3】

【도면B 4】

【도면B 5】

【도면B 6】

【도면B 7】

【참고도면B 1】

【참고도면B 2】

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물품류】란의 위에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예]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3 88

【물품류】 제1류

바. 도면의 쪽수가 여러 쪽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각 디자인마다 각 페이지 아랫부분의 여백 중앙에 도면의 총 쪽수와 해당 쪽과의 일련관계를 표시합니다.

[예] 3-1, 3-2, 3-3

2. 도면의 작성방법

가. 도면의 기초정보

- 1) 【물품류】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물품류를 적습니다.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적은 것과 같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 3) 【디자인의 설명】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에 따라 적습니다.
- 4)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에 따라 적습니다.

나. 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 1) 디자인의 도면은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하고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도면을 도시(圖示)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디자인의 창작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화면을 정지화면으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도면 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앞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3은 디자인의 뒷면을, 도면 4는 디자인의 왼쪽면을, 도면 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 도면 6은 디자인의 윗면을, 도면 7은 디자인의 아랫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2] 도면 1은 디자인의 표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2는 디자인의 이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예 3] 도면 8은 도면 3 중 A부터 A'까지의 절단면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9는 도면 4 중 A부분의 확대를 표현하는 도면임.

- 2) 1)항의 도면만으로 그 디자인의 용도 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상태도 등 참고도면을 【참고도면】란에 도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참고도면 1은 이 물품의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것임

- 3)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거나, 도면 작성상 생략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생략한 부분을 두 선의 평행한 1점쇄선(鎖線)으로 절단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취지 및 생략한 부분의 도면상 길이를 적습니다.

- 4) 봉재(封材), 선재(線材), 판재(版材), 관재(棺材) 등과 같이 형상이 연속하는 것 또는 지

물(紙物)과 같이 모양이 연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것을 표시하는 도면은 그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연속하는 상태를 알 수 있게 도시하며,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설명】란에 형상이나 모양이 어느 한 방향 또는 상하좌우로 연속 또는 반복하는 것인지 등을 적습니다.

- 5) 단면도 또는 절단부 단면도의 절단면에는 평행사선을 긋고(이질의 결합에 따른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내려면 각기 다른 방향의 평행사선을 긋습니다), 그 절단된 부분을 그 밖의 도면에서 쇠선으로 표시하되, 쇠선의 양끝에 부호를 붙이고 화살표로 절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 6) 부분 확대도를 도시할 경우에는 그 확대한 부분을 해당 부분 확대도의 원래의 도면에 쇠선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 다.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

- 1) 조립완구와 같이 그 구성물의 도면만으로는 사용의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 만들어지는 상태 또는 완성된 상태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고, 조립한 후 분해하는 것과 같이 조립한 상태의 도면만으로는 분해된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각 구성물의 도면을 추가합니다.
- 2) 움직이는 것, 열리는 것 등의 형태가 변화하는 디자인으로서 움직임 또는 열림에 따라 디자인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일련의 도면을 도시하거나 변화 전과 변화 후 상태의 도면을 각각 도시하고, 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까지는 열린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은 닫힌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임

- 3)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한 디자인의 도면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작성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 ① 바깥쪽 둘레에 색채가 없어 모양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하게 보이는 부분은 보이는 대로 표시합니다.
  - ②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의 어느 한 부분에 모양 또는 색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밑바닥의 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내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 또는 색채만을 나타냅니다.
  - ③ 바깥쪽 둘레의 바깥면·안쪽면 또는 그 두께면이나 바깥쪽에 둘러싸인 내부의 어느 곳에 둘 이상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각 면에 표시합니다.

#### 라. 부분디자인의 도면

- 1)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 외의 부분은 파선(破線)으로 표현하거나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2) 부분디자인을 견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 3) 부분디자인을 사진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체디자

인 중 부분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정색 등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을 출원합니다. 다만, 전체디자인이 검정색 등 무채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채색으로 칠하여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채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부분디자인을 디자인등록출원하는 경우에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서 해당 부분을 특정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 5) 그 밖의 작성방법은 이 서식의 기재방법 제2호 도면의 작성방법 중 나목(일반적 디자인의 도면) 및 다목(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 마. 화상디자인의 도면

- 1)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 밖의 기재방법은 라목의 부분디자인 도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의 순서와 형태가 분명해야 하며, 형태의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 구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의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도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을 도면에 도시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물품마다 그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각각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합된 상태의 디자인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합니다. 또한 도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란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도면A 1부터 도면A 7은 찻잔이고, 도면B 1부터 도면B 7까지는 받침접시이며, 도면C 1부터 도면C 7까지는 한 벌의 다기 세트임.

### 3. 참고사항

가. 도면이 2면 이상으로 된 경우 처음 면 외의 면에는 【물품류】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 【디자인의 설명】란 및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도면을 같음하여 서면으로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가로 10cm × 세로 15cm 이하, 최소 가로 7cm × 세로 10cm 이상의 크기로 하여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배경·음영 등이 디자인의 대상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 모든 도면을 사진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진이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도면을 같음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습니다.

다. 도면을 같음하여 서면으로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 쉽게 파손되거나 변경·변질되지 않을 것

2) 취급 및 보존이 쉬울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 견본 한 개와 견본의 사진(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 각 1통)을 각각 이 서식에 첨부할 것

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이 서식의 기재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면에 도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 4. 전자문서 이용 시 유의사항

##### 가. 입력가능 문자 및 이미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표준(KSC5601, KS 2바이트 완성형)문자에 포함된 문자 및 기호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문자 또는 도형 등은 이미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입력합니다.

1) 도면 내용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이어야 합니다.

2) 디자인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흑백 또는 컬러 이미지의 입력이 허용되며, 이들의 이미지파일 형식은 해상도 300dpi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어야 합니다.

3) 도면 내용의 이미지는 '삽입그림'의 형식으로 완전히 삽입·저장되어야 하며, '객체 연결 및 삽입'[OLE(Object Linking and Embedding)] 또는 '동적 자료교환'[DDE(Dynamic Data Exchange)]의 형식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도면을 3차원 모델링(Modeling)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IGES(Initial Graphic Exchange Specification 또는 IGS), OBJ(Object file format),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Data 또는 STP) 또는 STL(Stereo Lithography)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참고도면을 동영상파일 형식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SWF(Small Web Format),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WMV(Window Media Video), Animated GIF(Graphics Interchange Format) 또는 AVI(Audio Video Interleave)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영상에는 디자인의 대상을 명확히 표현하여 중화질(640× 480) 수준에 초당 용량이 600~700K/sec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출원의 용량은 총 20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글자체 디자인 도면

(앞쪽)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2025.11.28. 삭제 예정)**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뒤쪽)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관련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2항).

## ※ 기재방법

1. 글자체의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도록 도면에 적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보기문장 및 대표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글자체가 적힌 것으로 봅니다.
2.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란은 이미 알려진 글자체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고, 등록요건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창작한 글자체디자인의 분류를 적을 수 있습니다.
3. 글자체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글, 영문자, 그 밖의 외국문자, 숫자, 특수기호 또는 한자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각각 출원하며, 각 출원건마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글자체 디자인 도면)에서 정하는 【지정글자 도면】 , 【보기문장 도면】 , 【대표글자 도면】 을 도시합니다.

가. 한글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1호(한글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나.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2호(영문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다. 영문자를 제외한 그 밖의 외국문자 글자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1) 【지정글자 도면】 : 해당 외국문자의 알파벳 전체를 적습니다.

(2) 【보기문장 도면】 : 영문자의 대표문장을 해당 외국문자로 번역하여 적습니다.

(3) 【대표글자 도면】 : 영문자의 대표글자에 준하여 해당 외국문자의 낱글자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글자를 적습니다.

라. 숫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3호(숫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마. 특수기호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지정글자 도면】 란에는 【지정글자 도면 1】 , 【지정글자 도면 2】 , 【지정글자 도면 3】 …순으로 식별항목을 기재할 수 있고, 이때 【지정글자 도면 1】 의 기재는 별표 1 제4호(특수기호 글자체 도면)의 【지정글자 도면】 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바. 한자 글자체의 경우는 별표 1 제5호(한자 글자체 도면)에서 규정한 【지정글자 도면】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란의 내용을 그대로 도시합니다.

4. 각 도면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 (보존용지(2종) 70g/m<sup>2</sup>)의 A4 용지를 세로로 하여 위쪽 40mm, 왼쪽 25mm, 아래쪽 및 오른쪽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적습니다.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은 가로 165mm, 세로 237mm 이내이며, 각 용지는 한 면에 하나의 도면만을 적습니다.

나.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항목을 【지정글자 도면 1】 , 【지정글자 도면 2】 …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란의 순으로 작성하여 용지의 위쪽 여백 중앙에 적습니다. 다만, 글자체디자인 도면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식별 항목을 적지 않습니다.

- 다. 【지정글자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mm × 세로 5mm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 12줄 × 세로 9줄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 라. 【보기문장 도면】란은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의 네 모서리에 가로 5mm × 세로 5mm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두고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합니다.
- (1) 한글·영문자·한자의 경우에는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을 1장으로 구성하며, 큰 보기문장과 작은 보기문장 사이는 최소한 10mm 이상의 간격을 둡니다. 큰 보기문장은 작은 보기문장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며,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작은 보기문장의 글자의 크기는 20pt를 기준으로 하되, 글줄이 3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글자크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으며, 글자 사이는 기본값을 0%로 하고,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 (2) 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글자의 이미지가 표시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크게 작성하고, 글자 사이 및 글줄 사이는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 마. 【대표글자 도면】란에는 한글 및 한자의 경우에는 가로 4줄 × 세로 3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선의 굵기 0.25pt)을, 영문·숫자·특수기호의 경우에는 가로 3줄 × 세로 2줄의 영역표시 보조선을 둡니다. 각 대표글자는 영역표시 보조선 내의 각 사각형의 한가운데 위치하도록 하고, 각 사각형으로부터 2mm의 여백을 둔 상태에서 최대한 크게 표기하되, 모든 글자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 바.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 아래에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글자체 글꼴 파일인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 아래에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이나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 2D이미지파일(JPEG, TIFF)과 폰트파일(TTF)을 혼합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및 【대표글자 도면】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이미지파일(파일의 확장자가 ai인 파일)을 수정하여 작성한 후 200dpi 이상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파일 또는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지정글자 도면 등(폰트파일 제출 시)】은 폰트파일[TTF(True Type Font)]로 제출합니다.
5. 그 밖의 기재방법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방법 제18호의 차목, 별지 제4호서식(디자인 도면)의 기재방법 제1호의 다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의 가목, 제3호의 가목 및 제4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발간 등록 번호  
11-1430000-001343-14

로카르노 분류 제15편 반영




# 물품류별 물품목록

디자인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 제2024-21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한 벌 물품의 구분

부 록



연번	한 벌의 품목	품목류(예시)	구성분류(예시)
1	한 벌의 여성용 한복세트 (A set of women's Hanbok)	제2류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
2	한 벌의 남성용 한복세트 (A set of men's Hanbok)	제2류	저고리 바지 마고자 두루마기
3	한 벌의 여성용 속옷세트 (A set of women's underwear)	제2류	브래지어 팬티 기들 슬립 캐미솔 페티코트 바디슈트
4	한 벌의 장신구 세트 (A set of jewellery)	제11류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발찌
5	한 벌의 커프스 버튼 및 넥타이핀 세트 (A set of cuff buttons and tie pins)	제2류	커프스 버튼 넥타이 핀
6	한 벌의 흡연용구 세트 (A set of smoking accessories)	제27류	탁상용 라이터 재떨이 담배함 받침대 담뱃대 이불
7	한 벌의 침장세트 (A set of bedding)	제6류	요 베개 매트리스 커버 패드 이불커버 요커버 베개커버
8	한 벌의 커피 용구 세트 (A set of coffee supplies)	제7류	커피잔 및 받침접시 커피 주전자 프림 따르개 커피통 설탕통

연번	한 벌의 품목	분류(예시)	구성품종(예시)
			프림통 통받침대 여과기 티스푼 티스푼 꽃이
9	한 벌의 화재 용구 세트 (A set of kitchen utensils for punch [drink])	제7류	화재불 화재컵 화재주걱 화재주전자 화재국자
10	한 벌의 반상기 세트 (A set of dinnerware)	제7류	밥그릇 대접 탕기 조치 보시기 종지 쟁첩 조칫보 쟁반
11	한 벌의 다기(茶器) 세트 (A set of teaware)	제7류	차주전자 숙우 찾잔 받침접시 다기용 거름망 다기용 퇴수기
12	한 벌의 양념용기 세트 (A set of spice containers)	제7류	설탕통 간장통 소금통 후추통 소스통 통받침대
13	한 벌의 밥그릇과 국그릇 세트 (A set of bowls)	제7류	밥그릇 국그릇
14	한 벌의 주기(酒器) 세트 (A set of liquorware)	제7류	술주전자 술병 술잔
15	한 벌의 나이프, 포크 및 스푼 세트 (A set of cutlery)	제7류	ナイ프 포크 스푼

연번	한 벌의 품목	품목류(예시)	구성품목(예시)
16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A set of spoons and chopsticks)	제7류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및 젓가락용 받침대
17	한 벌의 제기(祭器) 세트 (A set of Jegi [Korean ancestral rite goods])	제11류	향로 지방틀 촛대 편틀 어틀 술잔 간대 제사용그릇 밥그릇 국그릇 모사그릇 탕기 퇴주그릇 간장종지
18	한 벌의 세면 화장대 세트 (A set of dressing tables with washbasins)	제6류	세면화장대 화장거울 수납장
19	한 벌의 책상과 책꽂이 세트 (A set of desks and bookcases)	제6류	책상 책꽂이 서랍장
20	한 벌의 거실용 가구 세트 (A set of furniture for living rooms)	제6류	거실용 수납장 장식장
21	한 벌의 테이블 세트 (A set of tables)	제6류	테이블
22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A set of furniture for offices)	제6류	사무용 테이블 파티션 서랍통 책장 파일박스 로커
23	한 벌의 응접 세트 (A set of furniture for receptions)	제6류	응접탁자 소파
24	한 벌의 탁자와 의자 세트 (A set of tables and chairs)	제6류	탁자 의자 식탁 식탁의자

연번	한 벌의 품목	품목류(예시)	구성품목(예시)
25	한 벌의 부엌가구 세트 (A set of furniture for kitchens)	제6류	싱크대 조리대 가스레인지대 수납선반
26	한 벌의 서도용구(書道用具) 세트 (A set of calligraphy tools)	제19류	먹 버루 연적 버루함 붓 문진 먹가는 도구
27	한 벌의 필기구 세트 (A set of writing instruments)	제19류	샤프펜슬 볼펜 만년필 형광펜
28	한 벌의 오디오 세트 (A set of audio equipments)	제14류	튜너 앰프 데크 스피커박스 이퀄라이저 턴테이블
29	한 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A set of personal computers)	제14류	PC 본체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PC용 카메라 모뎀
30	한 벌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받침대 세트 (A set of televisions and stands)	제14류	텔레비전 수상기 받침대
31	한 벌의 문짝과 문설주 세트 (A set of door leaves and studs)	제25류	문짝 문설주
32	한 벌의 화장실 청소용구 세트 (A set of cleaning equipment for toilets)	제4류	케이스 부착 변기용 슴 화장실용 슴 변기압축기
33	한 벌의 세면용구 세트 (A set of toiletries)	제23류	비눗갑 비누받침대 칫솔걸이

연번	한 벌의 물품	물품류(예시)	구상물품(예시)
			양치용 컵 대야 전기칫솔 전기칫솔홀더
34	한 벌의 전기칫솔 세트 (A set of electric toothbrushes)	제28류	전기칫솔용 충전기 전기칫솔용 거치대
35	한 벌의 캠핑용 식기 세트 (A set of camping utensils)	제7류	캠핑용 냄비 캠핑용 프라이팬 캠핑용 프라이팬 뚜껑 캠핑용 접시 캠핑용 밥그릇 캠핑용 주걱 캠핑용 국자 캠핑용 바람막이 캠핑용 컵
36	한 벌의 자동차용 바닥매트 세트 (A set of mats for automobiles)	제6류	자동차용 바닥매트
37	한 벌의 야외용 테이블 및 의자 세트 (A set of outdoor tables and chairs)	제6류	야외용 테이블 야외용 의자 야외용 테이블 부착 의자 과라솔
38	한 벌의 자동차용 시트커버 세트 (A set of automobile seat covers)	제6류	자동차용 시트커버
39	한 벌의 변기용 부속품 세트 (A set of toilet accessories)	제23류	변기뚜껑커버 변기용 의자커버 화장실용 매트
40	한 벌의 골프클럽 세트 (A set of golf clubs)	제21류	골프클럽
41	한 벌의 드럼 세트 (A set of drums [musical instruments])	제17류	드럼 심벌
42	한 벌의 사무용구 세트 (A set of office equipments)	제19류	사무용 가위 사무용 종이칼 사무용 종이커터 사무용 자 사무용 스테이플러
43	한 벌의 자동차용 페달 세트 (A set of accelerator pedals for motor cars)	제12류	엑셀러레이터 페달 브레이크 페달 보조 페달 할러치 페달

연번	한 벌의 물품	물품류(예시)	구성물품(예시)
44	한 벌의 차량용 오디오기기 세트 (A set of audio equipments for vehicles)	제14류	차량용 튜너 차량용 앰프 차량용 스피커박스
45	한 벌의 스피커박스 세트 (A set of speaker boxes)	제14류	스피커박스
46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 (A set of Taekwondo uniforms)	제2류	태권도복 상의 태권도복 하의
47	한 벌의 유도복 세트 (A set of Judo uniforms)	제2류	유도복 상의 유도복 하의
48	한 벌의 검도복 세트 (A set of Kumdo uniforms)	제2류	검도복 상의 검도복 하의
49	한 벌의 등산복 세트 (A set of climbing suits)	제2류	등산복 상의 등산복 하의
50	한 벌의 스키복 세트 (A set of ski suits)	제2류	스키복 상의 스키복 하의
51	한 벌의 승마복 세트 (A set of equestrian uniforms)	제2류	승마복 상의 승마복 하의
52	한 벌의 야구복 세트 (A set of baseball uniforms)	제2류	야구복 상의 야구복 하의
53	한 벌의 손톱·발톱 미용기구 세트 (A set of nail and toenail beauty equipments)	제28류	손톱 깎기 발톱 깎기 손톱정리용 줄 발톱정리용 줄 손톱정리용 푸서 미용 가위 안전 가위 족집게 귀이개 티눈 군살제거기 코털 깎기 헤어용 브러쉬
54	한 벌의 가방 세트 (A set of bags)	제3류	신발 가방 책가방 여행용 가방
55	한 벌의 지갑 및 벨트 세트 (A set of wallets and belts)	제2류	지갑 벨트
56	한 벌의 화장용 브러시 세트 (A set of cosmetic brushes)	제4류	입술연지용 브러시 볼연지용 브러시 아이섀도우용 브러시 면도용 브러시

연번	한 벌의 품목	분류(예시)	구성품(예시)
57	한 벌의 머리 빗 세트 (A set of combs)	제28류	머리빗 머리술
58	한 벌의 이발기구 세트 (A set of hair clippers)	제28류	이발기 전기 이발기 커트 가위 이발 가위 술가위 장가위 가위집 이발용 보자기 전기 면도기 헤어폼(킬러) 고데기 헤어커트용 어깨 덮개판 헤어 드라이어
59	한 벌의 면도용구 세트 (A set of shaving gear)	제28류	면도기 면도날 면도용 거품기 면도용 브리시 전기 면도기 전기 면도기 충전기
60	한 벌의 수유용품 세트 (A set of breast-feeding supplies)	제7류	젓병 젓꼭지 젓병소독기 젓병 거치대
61	한 벌의 출산 준비물 세트 (A set of items for labor and delivery)	제6류	기저귀 유아용 속싸개 유아용 길싸개 포대기 유아용 이불 유아용 요 유아용 베개 유아용 수건 유아용 방수커버 유아용 기저귀 커버 유아용 기저귀 밴드
62	한 벌의 커튼 및 블라인드 세트 (A set of curtains and blinds)	제6류	커튼 블라인드 셰이드 버티컬 커튼용 타이백 롤 스크린

연번	한 벌의 품목	분류(예시)	구성품(예시)
63	한 벌의 트로피·상패 세트 (A set of trophies and plaques)	제11류	상패 트로피 기념패 기념패용 케이스
64	한 벌의 액자 세트 (A set of picture frames)	제6류	탁상용 액자 걸이용 액자 접이용 액자
65	한 벌의 정리용 수납상자 세트 (A set of storage boxes for organizing)	제6류	수납상자
66	한 벌의 아이스박스 세트 (A set of cool boxes)	제7류	아이스 박스
67	한 벌의 주방용 밀폐용기 세트 (A set of storage containers for kitchen use)	제7류	주방용 밀폐용기
68	한 벌의 와인잔 세트 (A set of wine glasses)	제7류	와인잔
69	한 벌의 주방용 칼 세트 (A set of kitchen knives)	제8류	부엌칼 과도 회칼 치즈칼 빵칼 피자칼 칼갈이 알꽃이 주방 가위 감자칼 파채칼
70	한 벌의 주방용 국자 및 뒤집개 세트 (A set of ladles and turners for kitchen use)	제7류	국자 거품기 집게 뒤집개
71	한 벌의 남자용 수의(壽衣) 세트 (A set of men's shrouds)	제2류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 속바지 버선 도포 도포끈 대님 허리띠 오낭

연번	한 벌의 품목	분류(예시)	구성품목(예시)
			행전 두건 수의용 하대 입 덮개 면모 악수 신발 장포 멧베 이불 요 베개 복건 손사개 장대 턱받침 악수 수의용 합
72	한 벌의 여자용 수의(壽衣) 세트 (A set of women's shrouds)	제2류	두루마기 저고리 바지 속바지 속저고리 치마 속치마 버선 두건 수의용 하대 원삼 원삼근 족두리 이불 요 베개 면모 복건 손싸개 오낭 장대 턱받침 악수 입 덮개 면포

연번	한 벌의 품목	품목류(예시)	구성품(예시)
			신발 장포 뱃배 수의용 합
73	한 벌의 침실용 가구 세트 (A set of furniture for bedrooms)	제6류	침대 협탁 침대받침
74	한 벌의 가구용 손잡이 세트 (A set of handles for furniture)	제8류	가구용 손잡이
75	한 벌의 운동용 아령 및 역기 세트 (A set of dumbbells and barbells for athletics)	제21류	아령 역기
76	한 벌의 게임기 세트 (A set of games consoles)	제21류	게임기 게임기용 조작기 게임기용 모니터
77	한 벌의 제도용구 세트 (A set of drawing implements)	제19류	직각자 삼각자 각도기 컴퍼스 연필깎기 샤프심 지우개
78	한 벌의 스위치 및 콘센트 세트 (A set of switches and power points [electricity])	제13류	스위치 콘센트
79	한 벌의 원예용구 세트 (A set of gardening tools)	제8류	절단가위 모종삽 모종 포크 호미 분무기
80	한 벌의 수동공구 세트(A set of hand tools)	제8류	스패너 렌치 드라이버 플라이어 줄자 몽키 천지가위 집는 칼 니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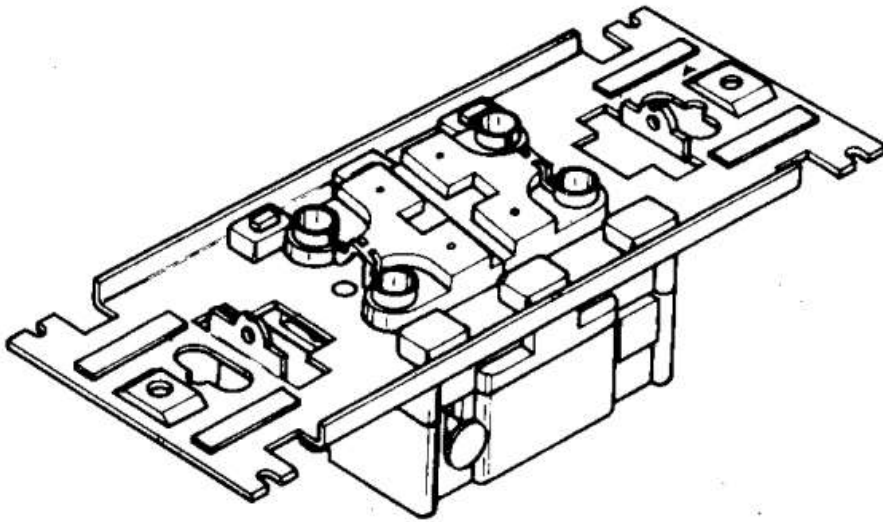
연번	한 벌의 물품	품목류(예시)	구성물품(예시)
			공구가방 망치
81	한 벌의 드라이버 세트 (A set of screwdrivers)	제8류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충전기(전동드라이버 전용) 케이스 비트
82	한 벌의 손목시계 세트 (A set of wrist watches)	제10류	여성용 손목시계 남성용 손목시계
83	한 벌의 반창고 세트 (A set of band-Aids)	제24류	반창고
84	한 벌의 부항기 세트 (A set of suction cups)	제24류	부항기 부항기용 흡입기 부항기용 케이스
85	한 벌의 프라이팬 세트 (A set of frying pans)	제7류	프라이팬
86	한 벌의 선박용 조타실(操舵室) 가구 세트 (A set of furniture for wheelhouse)	제6류	조타실용 책장 조타실용 사물함 기상자(Flag locker)
87	한 벌의 선박용 침실 가구 세트 (A set of bedroom furniture for ships)	제6류	선박용 침대 선박용 협탁 선박용 옷장
88	한 벌의 선박용 휴게실 가구 세트 (A set of lounge furniture for ships)	제6류	선박용 책장 선박용 책상 선박용 냉장고 캐비닛 선박용 소파
89	한 벌의 선박용 선원식당 가구 세트 (A set of cafeteria furniture for ships)	제6류	선박용 식탁 테이블 선박용 식탁 의자 선박용 냉장고 캐비닛 선박용 싱크대 선박용 협탁
90	한 벌의 자동차용 대시보드 패널(dashboard panel, center fascia) 세트 (A set of)dashboard panels for motor cars	제12류	대시보드 자동차용 오디오 자동차용 네비게이션 자동차용 운전대(Steering wheel) 자동차용 계기판 자동차용 송풍구 자동차용 글로브박스

연번	한 벌의 물품	분류(예시)	구성품(예시)
91	한 벌의 레저자동차용 침실용 가구 세트 (A set of furniture for recreational vehicles)	제6류	레저자동차용 침대 레저자동차용 싱크대 레저자동차용 테이블
92	한 벌의 주방용 붙박이(built-in) 물품 세트 (A set of built-in appliances for kitchens)	제7류	오븐 가스쪽탑 전기호브 후드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셀러 싱크대 주방용 벽장 주방용 밀장 아일랜드 식탁
93	그밖에 둘이상의 물품이 한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주요 대법원 판례

진도별 판례 1. 스위치 사건 - 물품성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스위치)>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특허청에 1991년 1월 29일에 출원하여 1992년 2월 6일에 등록되었다<sup>1)</sup>. 합성수지 및 금속을 재질로 하고, 벽면에 매립 장착된 전기 배선 함체와 결합하고, 전면 커버체를 씌워서 사용하고, 스위치 접속부 우측 중앙부에 발광소자를 형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디자인권자)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를 받은 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1996당393, 물품성 인정). 그 후,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불복하였고 원심결은 취소되었다(1998허3279, 물품성 불인정), 이에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 2. 판시사항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

1) 디자인등록번호 제30-0123687호

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스위치 대판, 스위치 기판, 뚜껑체, 붙임쇠 및 위 붙임쇠 위에 끼움처리되는 작동체인 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완성품인 스위치의 조립과정에 있어 플레이트와 노브덮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조립한 상태로서, 거래관념상 또는 완성품인 스위치의 기능(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기능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능)상으로 볼 때, 스위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레이트 및 노브덮개가 결여된, 스위치로서의 '완성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에 가까운 '부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의 물품성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자료 1(을 제2호증의 1, 2)의 월간 건설물가표(1997년 11월호)를 보면, 소외 A사가 제조, 판매하는 스위치의 가격을 몸체, 붙임쇠 및 플레이트별로 각각 나누어 표시하고 있어 실제 거래사회에서 스위치는 그 이전부터 이미 부품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또 증거자료 2(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매립형 스위치에 있어서 붙임쇠를 포함한 스위치 몸체(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스위치 몸체'라고 한다)와 플레이트, 노브덮개 등은 조립된 채 완성품으로서만 판매되고 부품별로 따로 판매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나, 한편으로는 일부 회사의 제품은 스위치 몸체와 플레이트 등으로 분리하여 거래되기도 한다는 점, 나아가 스위치 몸체와 플레이트 등이 각각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규격이 맞는다면 스위치 몸체만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도 있고 부품 제조업체에 주문거래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실제로 피고가 만든 스위치 몸체에 원고가 만든 노브덮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이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나, 적어도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 증인 소외 2는 스위치 몸체와 플레이트 등이 각각 따로 거래되거나 판매되는 일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일반 수요자가 소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그렇다는 것뿐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스위치'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물품으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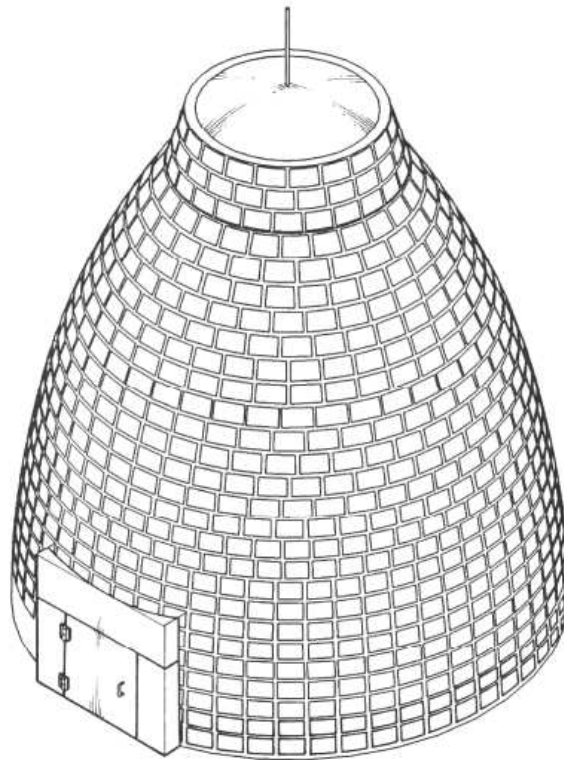
대상판결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스위치”라고 기재한 후 등록되었지만, 사실상 “스위치”가 아닌 “스위치용 부품”에 관한 디자인이다<sup>2)</sup>. 또한, 대상판결은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은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데, 부품의 경우 호환성, 구체적으로 **호환의 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한편, 본 사건은 제출된 증거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호환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물품성이 부정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부품에 관한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호환의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고, 제3자는 부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호환의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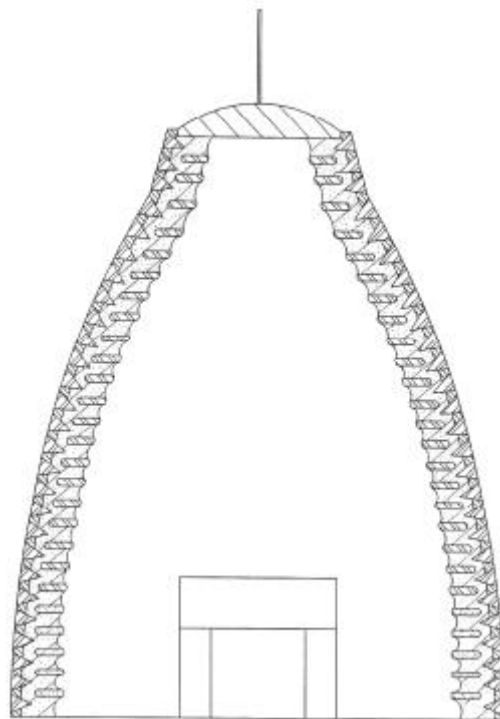
2) 정당한 물품명칭 기재 위반에 관한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2항은 등록 후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사유나 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도별 판례 2. 한증막 사건 - 물품성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후4311 판결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한증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단면도(한증막)>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특허청에 1998년 3월 24일에 출원하여 1998년 12월 8일에 등록되었다<sup>3)</sup>. 석재와 황토를 재질로 하고, 내부층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며,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내부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원적외선으로 한증 효과가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황토 한증막 디자인(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디자인)>

참고로, 상기 황토 한증막 디자인은 특허청에 2004년 4월 29일에 출원하여 2005년 6월 2일에 등록되었고, 상기 한증막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기 한증막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되었다<sup>4)</sup>. 상기 황토 한증막 디자인은 석판, 콘크리트, 모르타르, 황토 및 동판을 재질로 하고, 상기 황토에는 소금, 솔잎, 숯, 썩이 균등하게 섞인 첨가물이 혼합될 수 있으며, 황토한증막이 가열됨에 따라, 황토에서 원적외선이 발생됨과 동시에 솔잎, 숯, 썩 등에서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발생되게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원통형상으로, 상부로 갈수록 일정 너비까지 좁아지는 형상이고, 그 외주 면에는 사각 형상의 석판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면으로 사각 형상의 출입문이 있어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 환경 친화적인 미감을 나타내고 있다.

청구인은 불한증막 등에 관한 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업자로서,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다(2005당1133, 물품성 불

3) 디자인등록번호 제30-0233630호

4) 디자인등록번호 제30-0233630유사1호

**인정**). 이에 피청구인은 특허법원에 불복하였고, 당해 심결은 취소되었다(2006허701, **물품성 인정**). 그 후 특허심판원은 환송 심리를 통해 당해 심결을 기각하였다(2006당취소판결69, **물품성 인정**). 그 후 청구인은 다시 특허법원에 불복하였고, 당해 심결은 취소되었다(2007허5260, **물품성 불인정**), 이에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 2. 판시사항

### 1) 특허심판원 - 2006당69 심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위 규정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디자인이 “물품”에 해당하여야 할 것 인바, 위 “물품”과 관련하여서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토지에 고착하여 부동산이 되는 것이라도 그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하여 동산과 마찬가지로 관념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동산성을 인정하여 물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그 동산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① 양산성이 있는지 ② 조립된 상태에서 운반(유통)이 가능한지(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디자인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① 재질은 석재와 황토임. ② 내부층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고,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중략)...”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을 지면에 고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생산, 운반 및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① 설치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위 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요자의 요구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2-3인용의 가정용 등) 및 두께로 양산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② 위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방법은 물론 수공업적 생산방법도 포함되고 동일한 물품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도 일견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의 동일성이며, 양산이 가능하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양산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③ 위 물품이 내부는 황토와 석재로 적층하고 외부에는 화강암으로 적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다량생산이 불가능하다거나 운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위 물품이 다량생산 및 운반이 어려운 이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소형 한증막”을 트럭 등의 운반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제출된 점(을 제 8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⑤ 독창적이고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디자인제도 운영의 기본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위 제도운영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지면에 고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부동산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다량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하여 동산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한증막”은 그 동산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2)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것으로서, 디자인등록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 재질은 석재와 황토이고,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며,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내부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원적외선으로

한증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 사실, 한증막은 일반적으로 담을 둘러막아 굴처럼 만들고 밑에서 불을 때어 한증을 하기 위하여 갖춘 시설을 일컫는 것인바, 별지 도면에 표현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 외부층에는 축대를 쌓는 돌과 유사한 화강암을 27단의 높이로 종(鐘)과 같이 적층하되 그 하부 양측의 대향된 위치에 화강암 4단의 높이로 2개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내부층에는 황토와 석판을 교대로 적층하되 전체적으로 상당한 두께의 벽체를 형성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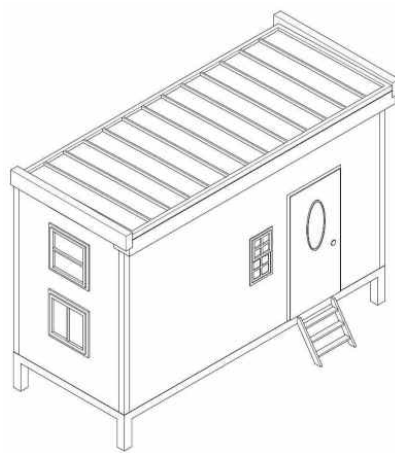
### 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후4311 판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시사점

대상판결의 결론부터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 확정되었다. 한편, 상기 황토 한증막 디자인(등록번호 제 30-0233630유사1호)은 기본디자인인 상기 한증막 등록디자인의 무효로 인해 함께 소멸되었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공보 및 증거자료를 기초로 판단했을 때, 상기 한증막 등록디자인이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의 성격 가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반복생산성(대량생산성) 및 운반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상기 한증막 디자인의 물품성과 디자인 성립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특허법원 및 대법원)은 등록디자인공보 및 증거자료를 기

초로 판단했을 때,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일 뿐, 반복생산성(대량생산성) 및 운반가능성이 있는 동산은 아니라는 이유로 상기 한층막 디자인의 물품성과 디자인 성립성을 불인정하였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물품의 정의는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예를 들어, 전원주택, 아파트, 리조트, 교량 등)은 동산이 아니므로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조립가옥 디자인>

따라서 출원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상기 조립가옥<sup>5)</sup>과 같이 **반복생산성 및 운반가능성을 전제하는 물품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디자인의 설명에 **반복생산성 및 운반가능성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이 디자인은 가옥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부품을 미리 생산, 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이 디자인은 교량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제로 제작, 조립하여 시공하는 공법으로 이루어짐” 등)을 기재하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오해받아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는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장(인테리어)을 디자인으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원주택, 아파트 등과 같은 건축물 외형도 시장에서의 소비와 구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사견으로는 건축물의 외형과 내장(인테리어)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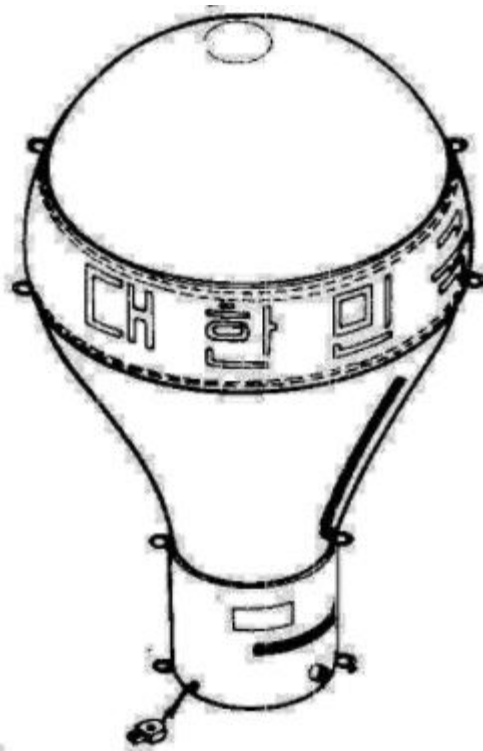
5) 디자인등록번호 제30-1090821호

진도별 판례 3. 조명기구용 틀 사건 - 시각성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조명기구용 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면>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특허청에 1991년 1월 24일에 출원한 후 1991년 12월 9일에 등록되었다<sup>6)</sup>.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재 파이프와 앵글을 재질로 하고, 조명기구의 내하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연결 조립하여 기구와 같은 내틀을 형성하여 공기 유출에 따른 조명기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청구인은 조명기구용 틀과 관련된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품이어서 물품성 흠결, 그 출원 전 간행물에 의해 공지되어 신규성 흠결, 국내 주지 디자인을 모방 한 것이어서 창작비용이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1994당1549, 시각성 언급 없음).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불복하였고, 인용되었다(1998허58, 시각성 인정). 이에 피청구인(디자인권자)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 2. 판시사항

### 1) 특허법원 1998. 11. 5. 선고 98허58 판결

이 사건 광고용 조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가 완성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 물품인 조명기구용 틀(이하 '틀'이라 한다)이 외피로 덮여 씌워져 있어 외부에서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틀을 조립한 후 외피가 덮여 씌워지기 전에는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외피로 덮여 씌워진 후라도 외피가 틀에 지지되어 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틀의 외곽의 형상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구를 분해하거나 파괴하지 않더라도 기구의 수리를 위하여 외피의 일부를 들추거나 광고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외피를 교체하는 경우 틀의 형상을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시각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등록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시각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다.

### 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디자인은 시각 즉, 육안으로 디자인

6) 디자인등록번호 제30-0122668호

을 파악·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물론 외부로부터 보이는 것이어야 하고, 물건이 완성된 경우 시각에서 사라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미감을 자아낼 수 없는 부분 즉, 물품을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만 볼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인 틀은 기구 속에 채워진 공기가 어떤 원인으로 약간 빠져나간 경우에도 기구의 외피(外皮)의 형상과 모양을 틀에 의하여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일 뿐, 틀 자체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틀이 외피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거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틀은 상당히 대형이어서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갖추어진 상태 즉, 조립·설치된 상태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거래 운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구의 설치 시에도 틀을 먼저 조립 설치한 후 즉, 등록된 디자인의 모습이 외부에 나타난 상태에서 외피를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외피를 설치한 후 그 외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외피의 하부로부터 틀을 조립·설치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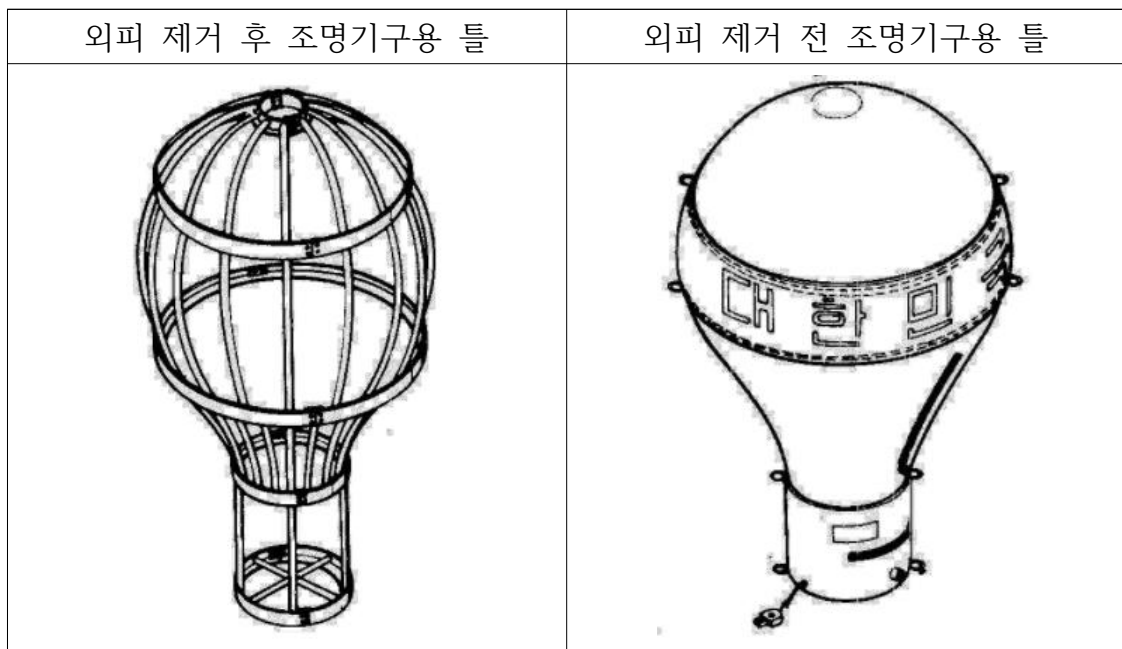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은 거래시나 운반시 또는 설치시에도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기구를 설치한 후에도 외피 안에 공기가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 한 외피의 형상과 모양만을 외부에서 볼 수 있을 뿐 그 틀은 외부에서 볼 수 없고, 단지 외피 속에 채워진 공기가 약간 빠져나간 비정상적인 경우에만 틀의 윤곽 즉, 틀의 형상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할 정도로 나타날 뿐이며, 나아가 광고 내용 등을 바꾸기 위하여 외피를 교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아도 외피를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날 것이나, 곧 디자인 물품인 틀 자체를 분해하고 새로운 외피를 설치한 후 그 새로운 외피 안에 들어가 다시 틀을 재조립하게 될 것인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물품인 틀은 그 자체의 완성된 형상과 모양이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노출되어 심미감을 자아낼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완성품인 기구의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지 않는 한 그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쉽사리 파악·식별할 수 없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틀이 외피로 덮여 씌워져 외부에서 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부에서 틀의 외곽의 형상을 알아볼 수 있다거나, 기구의 설치시나 수리시 또는 외피 교체시나 외피를 들추는 경우에는 틀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 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디자인의 시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 3. 시사점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디자인은 시각을 통해 인지 또는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은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시각을 통하여”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각 외의 감각을 주로 하여 파악되는 것,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하나의 단위,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곳. 즉, 분해하거나 파괴하여야 볼 수 있는 곳, 확대경 등에 의해 확대하여야 물품의 형상 등이 파악되는 것은 시각성 흠결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거래에서 확대경 등에 의해 물품의 형상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수요자에 보일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일반수요자가 전혀 볼 수 없는 디자인은 이 법에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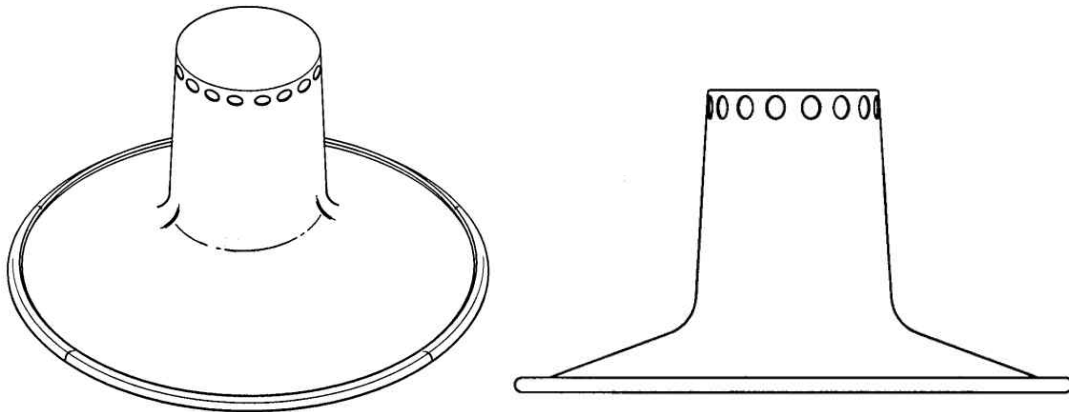
이 사건 ‘조명기구용 틀’의 경우 ‘외피 제거 후 조명기구용 틀’ 상태를 도면에 표현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이다. 심사 단계에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등록 후 분쟁 단계에서 대법원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더라도 ‘외피 제

거 후 조명기구용 틀' 상태가 일반수요자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보이는 경우는 없고, 외피를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 일반수요자에게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조명기구용 틀'의 시각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사실은 디자인도면의 [디자인의 설명]의 2번 항목("조명기구의 내하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연결 조립하여 기구와 같은 내틀을 형성한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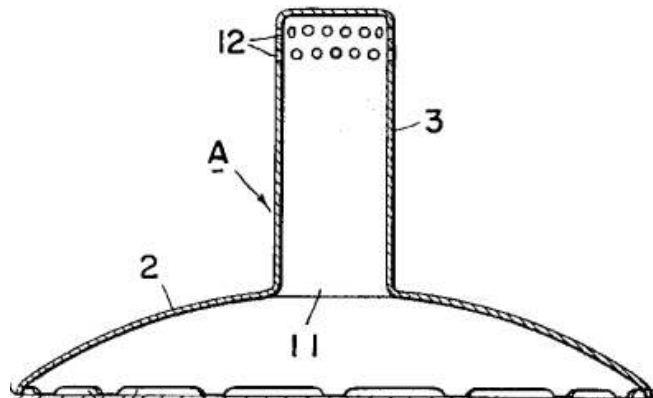
이 사건을 통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만으로는 시각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기 표의 '외피 제거 후 조명기구용 틀'만 보면, 이러한 물품이 일반수요자에게 당연히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목적이나 제작과정 등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외피 제거 후 조명기구용 틀'이 일반수요자에게는 보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디자인의 시각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 제작방법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진도별 판례 4. 거품 넘침 방지구 사건 -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빨래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



<선행디자인[일본 공개실용신안 1988-199712호, 밥 짓는 가마솥(취반부)]>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7)</sup>은 2000년 7월 28일에 출원하여 2001년 5월 23일에 등록된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금속재이고, 용기 본체의 걸림턱에 안착되는 스커트부와 이 스커트부로부터 상측으로 연장되는 원통부를 가지며 이 원통부의 상측둘레에 다수의 배출공이 형성된 것으로 빨래를 삶을 때 빨래가 타거나 눌지 않고 세제 거품이 용기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며 열손실을 방지하여 살균 및 세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침

7) 디자인등록번호 제30-0278044호

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01당2313, 물품의 비유사).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불복하였으나, 원심결은 유지되었다(2002허3085, 물품의 비유사).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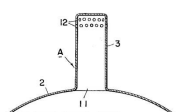
## 2. 판시사항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빨래 삶는 용기의 세제거품 넘침 방지구"는 빨래를 삶을 때 빨래가 타거나 눌지 않게 하고 세제거품이 용기 외부로 넘치는 것을 방지하여 열손실을 방지하고 살균 및 세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세탁보조기구인 데 반하여, 선행디자인인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 1988-199712호에 게재된 "밥 짓는 가마솥(취반부)"은 가마 속에 순환통을 넣어 밥을 지을 때 순환류를 부여하는 취사보조기구인바, 양 디자인의 물품은 그 기능 및 용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혼용될 수 없는 것으로, 거래통념상 동일·유사 물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디자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물품 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 종류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디자인의 순환통이 동일·유사한 물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 쓰이고, 위 일본국 공보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

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  (위 거품 넘침 방지구)'와 '

 (순환통)'으로서 서로 유사하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위 두 물품

모두 설치된 용기를 가열하는 장치가 위 각 물품 하단과 용기 사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 등을 직접 가열함에 따라 그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의 온도가 바깥 부분보다 높은 온도로 상승하면서 생긴 거품 등이 위 물품 윗부분에 있는 방출공으로 나오면서 냉각되었다가 다시 위 물품 아래쪽 밑부분으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부에 차 있는 물 등을 순환시킴으로써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서 생기는 세제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과 아울러 열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위 거품 넘침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순환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양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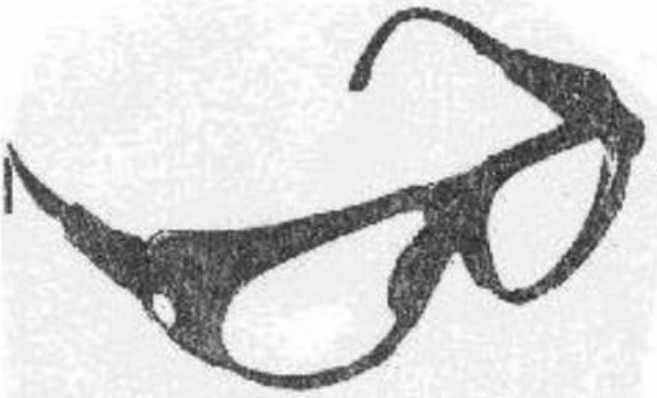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음식찌꺼기 발효통 사건(2000후3388 판결)과 전반적인 같은 법리를 취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사용 태양 관점에서 혼용하기 어려운 물품 간(세제거품 넘침 방지구 v. 밥 짓는 가마솥)에도 폭넓게 물품의 유사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소비자 관점에서는 세제거품을 다루는 물품과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혼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사한 형상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혼용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물품과 디자인의 불가분성’이 디자인보호법 전반에서 원칙적인 법리이지만,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전제가 되는 물품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태적 유사성과 혼용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진도별 판례 5 산업용 안경 사건(2003후762)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등록디자인 (사시도)	
등록디자인 (좌측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산업용 안경)>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확인대상디자인 (좌측면도)	

<확인대상디자인(산업용 안경)>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8)</sup>은 1998년 5월 29일에 출원하여 1999년 2월 18일에 등록된 산업용 안경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합성수지 및 유리재이고, 일반산업현장에서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으로서 참고사시도에서와 같이 안경다리를 홀더와 콘넥터를 이용하여 상, 하로 각도 조절할 수 있으며, 길이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디자인권자)은 피청구인에게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을 청구하여 인용심결을 받았다(2002당224, 디자인의 유사성 인정). 이에 피청구인은 특허법원에 불복하였으나, 원심결은 유지되었다(2002허7162, 디자인의 유사성 인정). 그 후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2. 판시사항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용 안경의 형상과 모양(이하 '피고의 디자인'이라고 한다)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인 산업용 안경은 산업 현장에서 작업시 파편, 분진 등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그 구성부분 중 ㉠ 안경테 주위에 부가된 보호용 덧살, ㉡ 안경다리의 앞쪽 부위에 삼각형 형태(구체적인 형상·모양은 조금씩 다르다)로 부가된 보호용 덧살, ㉢ 안경다리 중 귀에 걸리는 굴곡 부분은 폭이 좁고 앞쪽의 곧은 부분은 폭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형상·모양, ㉣ 정면에서 바라볼 때 대체로 역삼각형으로 형성된 렌즈 및 안경테의 모양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이미 안경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공지공용의 형상·모양으로서 누구나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것이나, 위에서 본 공지형상 부분들이 산업용 안경에 대한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피고의 디자인을 대비함에 있어서 위 공지형상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① 양 디자인은 모두 산업용 안경에 관한 것으로서 안경테, 렌즈, 코걸이, 홀더, 커넥터, 안경다리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점에서 기본적 구조·형상이 대체로 동일하고, ② 정면에

8) 디자인등록번호 제30-0237537호

서 관찰되는 모양도 양쪽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역삼각형 모양에 가까운 양쪽 렌즈를 둘러싼 안경테의 윗부분과 그 사이의 연결 부분이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코걸이 부분에서 아래로 약간 오목한 턱을 이루고 있는 형상 및 그 바로 아래의 코걸이 부분에서 약간 옆으로 긴 타원형의 홈과 그보다 좀 더 작은 홈이 차례로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전반적으로 동일하며, ③ 좌우측면에서 관찰되는 모양도 길이 조절용 원형 구멍 4개가 같은 간격으로 설치된 커넥터의 형상, 커넥터의 위 아래로 삼각형 형태의 보호용 덧살 2개가 부가된 형상, 커넥터에 동일한 형태의 안경다리가 부착되어 있는 형상이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고, ④ 평면에서 관찰되는 모양도 안경테, 코걸이, 홀더, 커넥터, 안경다리가 전체적으로 "U"자에 가까운 형상을 이루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은, ① 측면에서 바라본 홀더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홀더는 옆으로 누운 삼각형과 비슷한 모양임에 반하여, 피고의 디자인의 홀더는 사각형이 변형된 모양에 가깝고 그 중앙에 타원형의 금속까지 부착되어 있고, 홀더가 부착된 형상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홀더는 안경테의 바깥쪽 덧살 부위에 자연스럽게 부착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의 디자인의 홀더는 안경테의 바깥쪽 덧살 부위 중 약간 돌출된 부분에 부착되어 있으며, ② 커넥터에 부착된 보호용 덧살의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삼각형 형태의 보호용 덧살 2개가 같은 크기를 가지고서 위 아래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부착되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의 디자인은 아래쪽에 부가된 삼각형 형태의 보호용 덧살이 조금 더 작아 비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서로 상이하고, ③ 코걸이의 모양과 부착 형태 및 표면이 서로 다르다.

앞서 본 산업용 안경의 용도 및 사용 상태, 산업용 안경의 구성요소 중 공지공용의 형상·모양 부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피고의 디자인에 있어서 그 수요자에게 가장 잘 보이는 부분 또는 그 지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부는 정면에서 관찰되는 부분으로서 역삼각형 모양의 양쪽 렌즈를 둘러싼 안경테의 윗 부분과 그 사이의 연결 부분이 직선으로 이어지다가 코걸이 부분에서 아래로 약간 오목한 턱을 이루고 있는 형상, 그 바로 아래로 약간 옆으로 긴 타원형의 홈과 그보다 좀 더 작은 홈이 차례로 형성되어 있는 형상, 측면에서 관찰되는 부분으로서 길이 조절용 원형 구멍 4개가 같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삼각형 형태의 보호용 덧살 2개가 위 아래로 부착되어 있으며 안경다리를 결합하고 있는 커넥터의 형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요부에 해당하는 위 각 부분의 형상·모양의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거의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의 디자인이 그 밖의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차이점 중 ① 측면에서 바라본 홀더 부분의 형상·모양은, 그 홀더 부분이 안경의 양쪽 모서리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 차이의 정도로 인하여 정면에서 관찰될 경우 그 차이가 한눈에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시각적인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고, 측면에서 관찰될 경우 디자인의 요부를 이루는 부분에 해당하는 커넥터 및 그에 부착된 안경다리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므로, 홀더 부분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② 커넥터에 부착된 보호용 덧살 모양은, 삼각형 형태로 보호용 덧살을 부가한 형상이 이미 업계에서 공지공용의 형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다가, 그 차이도 보호용 덧살 2개 중 한쪽의 크기만을 약간 축소하여 변형한 정도에 불과하며, ③ 코걸이의 모양과 부착 형태 및 표면의 형상·모양은, 일반적으로 코걸이는 안경 전체의 크기에 비추어 비교적 작은 부분이고, 코걸이는 정면 또는 측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배면에서 자세히 관찰하는 경우에만 보이는 부분으로서 그 모양이나 부착 형태가 안경 전체의 시각적인 형상·모양을 크게 좌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물품 전체의 심미감에 기여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와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안경테, 렌즈, 코걸이, 홀더, 커넥터, 안경다리로 구성된 산업용 안경의 형상과 모양 중 안경테 주위에 부가된 보호용 덧살, 안경다리의 앞쪽 부위에 삼각형 형태로 부가된 보호용 덧살, 안경다리 중 귀에 걸리는 굴곡 부분의 각 형상과 모양, 정면에서 바라볼 때 대체로 역삼각형으로 형성된 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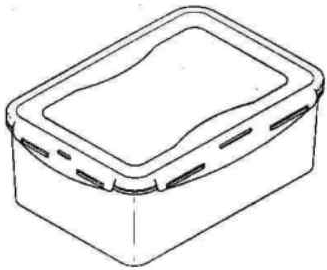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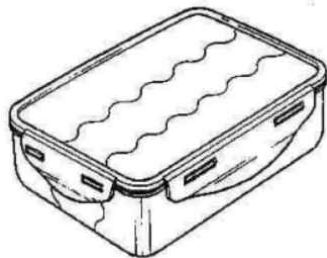
및 안경테의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이미 안경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것인 사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디자인공보의 도면 부분에 좌측면도를 확대한 사진이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디자인 모두 안경테의 정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안경테와 안경다리를 연결하는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디자인의 커넥터 부분은 원심 판시와 마찬가지로 그 심미감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홀더 부분에 있어서는 원심 판시와 같은 차이가 있고, 홀더와 커넥터로 구성된 측면부가 안경 착용자의 측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부분인 점, 양 고안의 정면 부분은 공지의 형상, 모양으로서 그 부분의 동일성이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홀더 부분의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인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도 부분에 중점을 두어 양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공지의 형상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야 하는 원칙은 인정하지만, 공지 부분에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특히,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시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양 디자인의 전체 대비 관찰만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등록디자인의 실질적인 권리범위(요부)를 사전에 예측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진도별 판례 6. 음식물 저장용 밀폐용기 사건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등록무효(디)]>

구분	대표도면
등록디자인	
인용디자인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9)</sup>은 2000년 7월 15일에 출원하여 2001년 4월 26일에 등록된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실리콘재이고, 뚜껑 테두리홈에 패킹이 형성된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다(2002당1820, 양 디자인의 유사성 인정). 그 후 피청구인은 특허법원에 불복하였으나, 원심결은 유지되었다(2003허199, 양 디자인의 유사성 인정). 그 후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판시사항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등록디자인공보에 게재된 '식품수납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디자인(이하 '인용디자인'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양 디자인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그 구조적 특징이 되는 기본 형태의 구성에 있어서 한 변이 다른 변보

9) 디자인등록번호 제30-0276817호

다 길이가 긴 4각형의 용기본체의 각 옆면 상단부에 2개씩의 잠금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용기본체와 분리된 용기뚜껑의 4변에 잠금날개가 각 형성되어 있는 점, 각 잠금날개에는 잠금돌기와 결합되는 가로막대형의 잠금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뚜껑 윗면에 절굿공이 형상이 형성되어 있고, 잠금날개의 2개의 잠금구멍 사이에 힌지라인을 따라 단층지게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1개씩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디자인에는 용기뚜껑 윗면에 2줄의 물결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잠금날개에 잠금구멍 이외에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용기뚜껑 윗면에 어떤 무늬를 부가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윗면 자체의 모양과 형상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는 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공지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용기뚜껑 윗면에 형성된 무늬는 상품 라벨 등이 부착되는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게 되고, 잠금날개에 형성된 가로막대형의 구멍은 용기의 위쪽 모서리를 따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데다가 그 양쪽에 형성된 잠금구멍과 그 형상이 매우 유사하여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양 디자인의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비록 양 디자인에 공통된 부분이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조적 특성상 그 형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단순한 형태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공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비교 관찰하여 보았을 때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용기본체가 직육면체의 형상이고, 용기뚜껑의 4변에 잠금날개가 각 형성되어 있고, 각 잠금날개에는 용기본체에 형성되어 있는 잠금돌기와 결합되는 가로막대형 잠금구멍이 2개씩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부분은 양 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이들 부분에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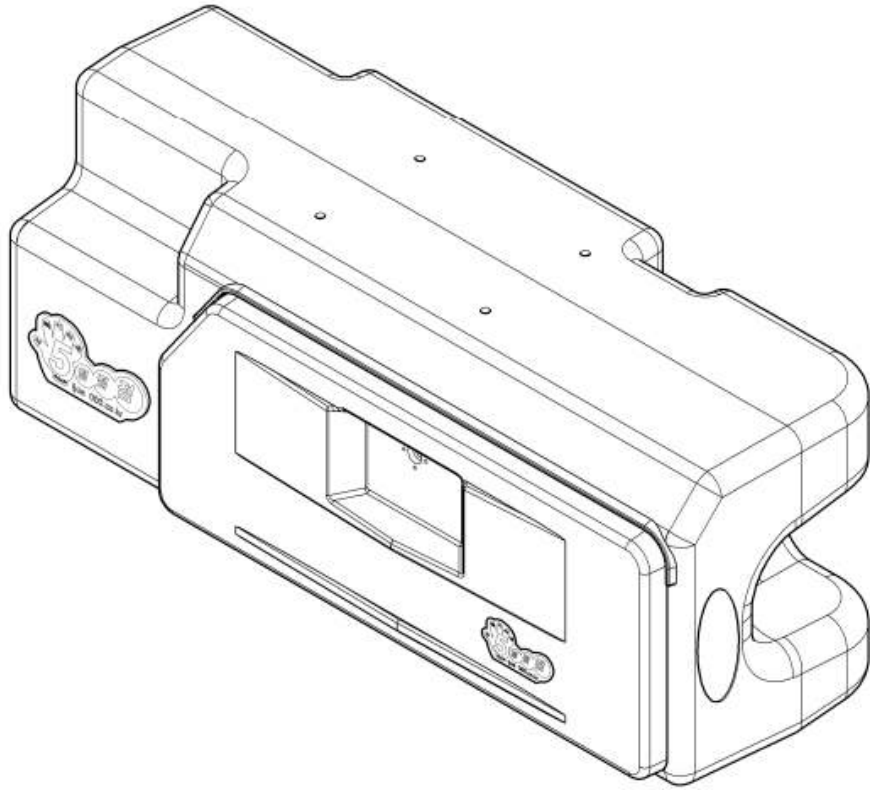
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용기뚜껑 윗면에 절긋공이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각 잠금날개에 형성되어 있는 2개씩의 잠금구멍 사이에 잠금날개가 접히는 부분을 따라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1개씩 더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용기뚜껑 윗면 및 용기본체의 옆면에 2줄의 물결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각 잠금날개에는 잠금구멍 이외에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인용디자인과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그 전체에서 인용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점을 간과한 채 양 디자인의 기본 형태의 구성에만 중점을 두어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디자인의 유사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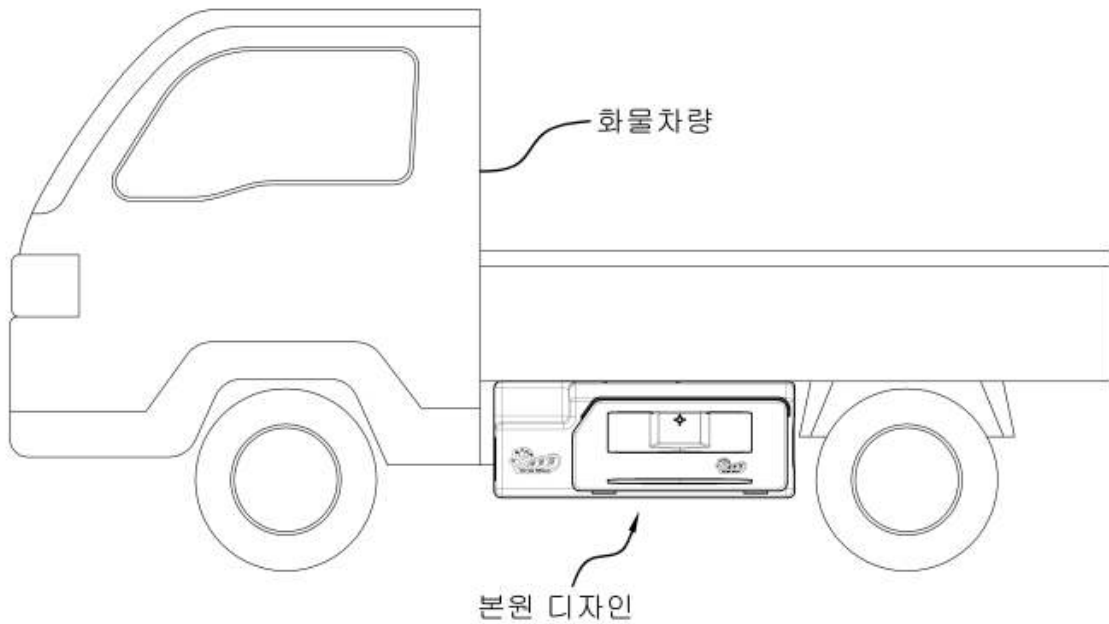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무효심판 사건에 관한 것이다.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흠결, 즉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양 디자인의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비중이 크다면 유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양 디자인의 공통점이 해당 물품에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하고, 그렇다면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 디자인은 비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통점이 해당 물품 분야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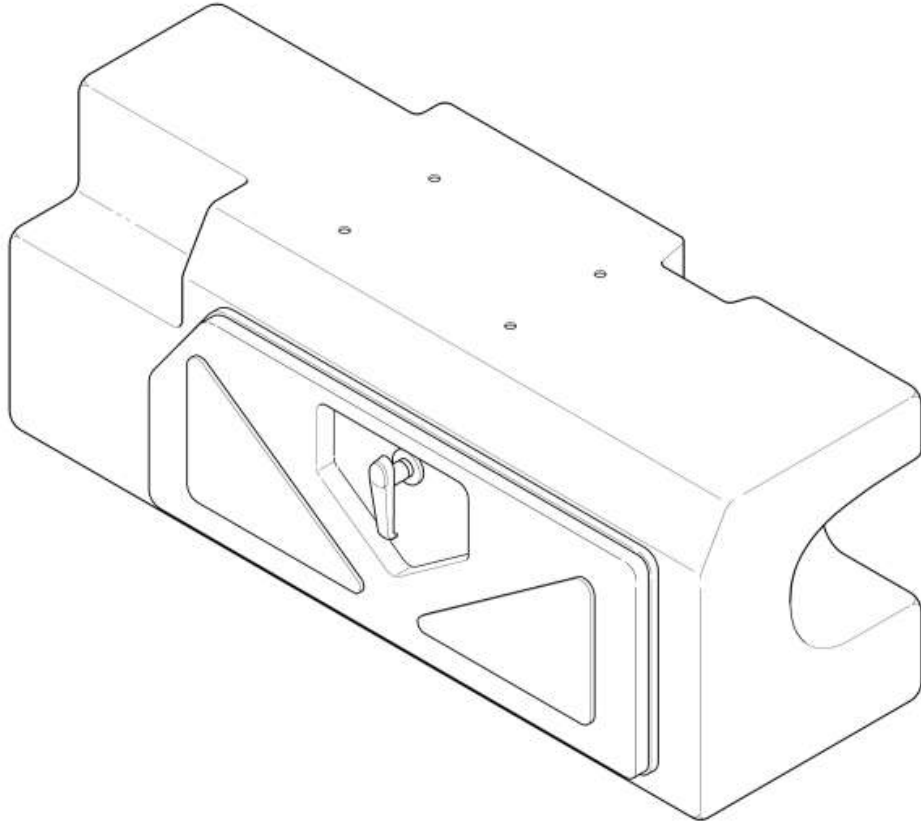
진도별 판례 7. 화물차량용 공구함 사건 -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등록무효(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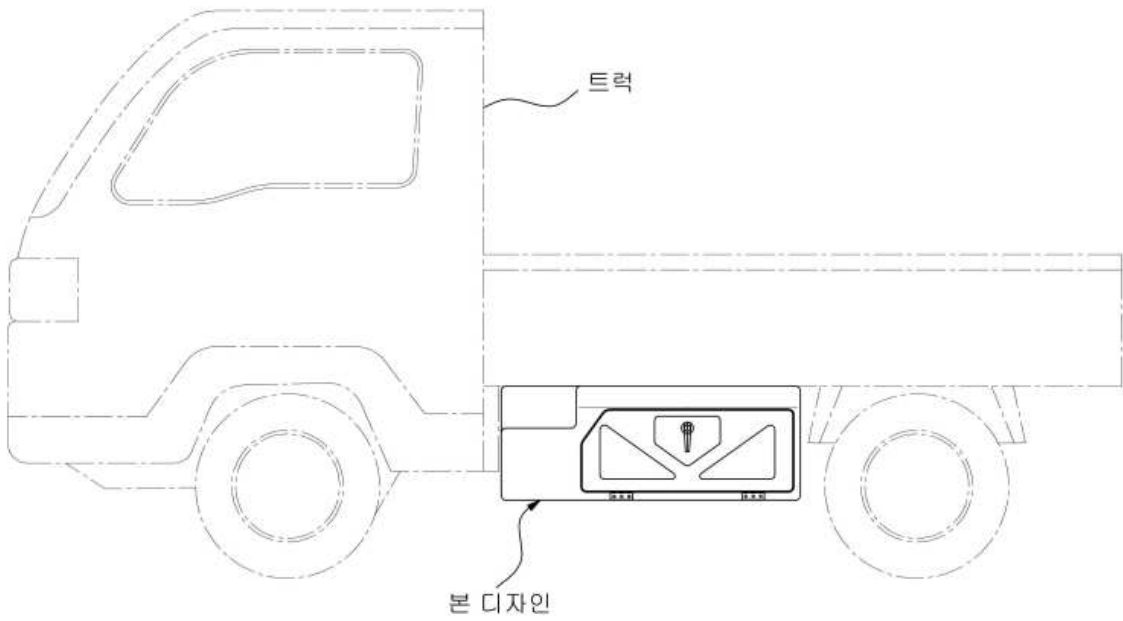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화물차량용 공구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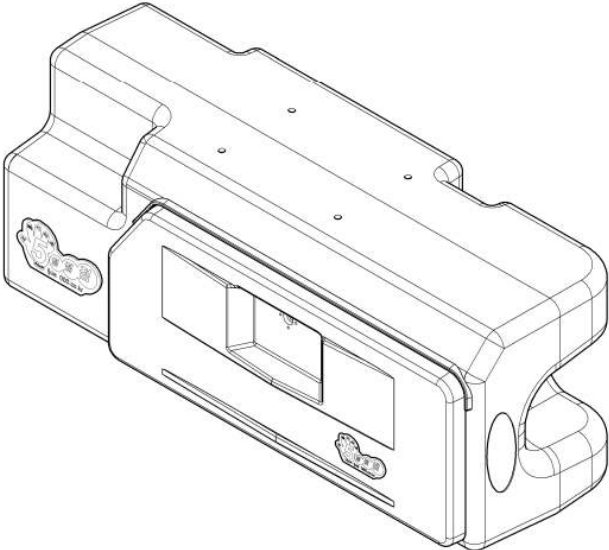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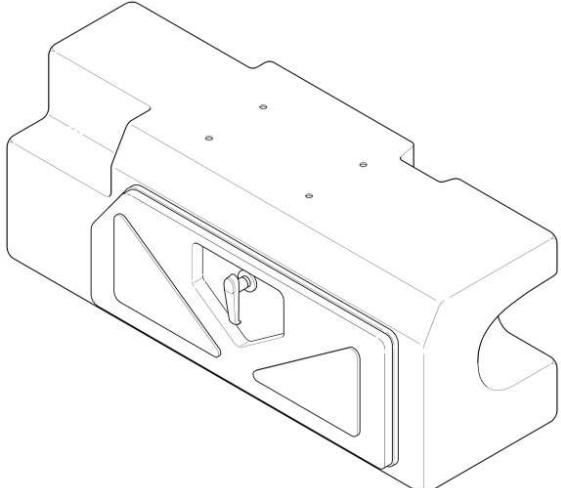


<비교대상디자인(트럭용 사물함)>



<비교대상디자인의 참고도면>

## 1. 사실관계

<p>등록디자인</p>	
<p>비교대상디자인</p>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10)</sup>은 2015년 4월 7일에 출원하여 2015년 7월 27일에 등록된 화물차량용 공구함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이고, 참고도면에서 보인 바와 같이 화물차량의 하부에 장착하여 공구 및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용도가 동일·유사한 트럭용 사물함의 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sup>11)</sup>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심결을 받았다(2015당5011, **디자인의 유사성 불인정**).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원심결을 취소하였다(2016허2010, **디자인의 유사성 인정**). 그 후 피청구

10) 디자인등록번호 제30-0808393호

11) 디자인등록번호 제30-0699151호, 출원일/등록일: 2012.7.13./2013.6.25.

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2. 판시사항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대상물품을 ‘화물차량용 공구함’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양 디자인은 ① 몸체부의 좌측 상부모서리에 직육면체 형상의 절개홈이 형성되어 있고, ② 전면에 형성된 직사각형의 여달이문은 좌측 상부가 45° 각도로 절삭되어 있으며, ③ 여달이문의 상부에 위치하는 몸체의 상단 우측에 기다란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④ 몸체부의 우측면 후방 중앙에 반구형상의 요입홈이 경사지게 형성되어 있으며, ⑤ 몸체의 배면 우측에 중간부위까지 하향 경사면이 형성되어 있고, ⑥ 몸체의 배면 중앙에 수직요입홈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화물차량용 공구함의 거래 시 수요자는 위와 같은 공통된 부분의 특징들을 포함한 물품 전체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 물품을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양 디자인의 공통된 형상이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장착 후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 유사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종래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한편, 양 디자인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일부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이 양 디자인의 지배적 특징의 유사성을 상쇄하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가지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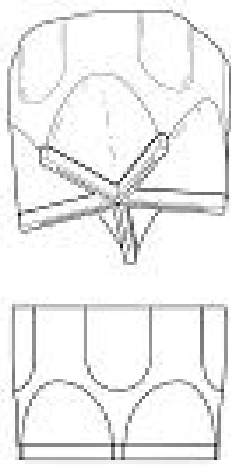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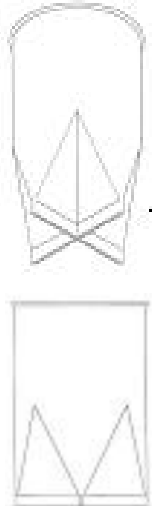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흠결 여부를 문제된 무효심판에 관한 것이다.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공통점 6가지와 몸체부 및 여닫이문 부분에 양각 또는 음각으로 형성된 무늬의 위치 및 모양 등 차이점이 있었고, 이 공통점과 차이점 중 어떤 것이 더 강한 미감을 발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청구인은 상기 공통점들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 또는 필요한 형상이므로 강한 미감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양 디자인의 차이점 대비 공통점이 종래 화물차량용 공구함 디자인 분야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운 참신한 형상<sup>12)</sup>이면서 물품의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시 양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더 강한 미감을 발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 만약 양 디자인의 공통점이 동종 물품 분야에서 흔하거나 이미 공지된 형상이나 모양인 경우라면 심판의 종국적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진도별 판례 8. 하수관용 악취방지구 사건 - 창작비용이성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후873 판결[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1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13)</sup>은 2007년 8월 1일에 출원하여 2007년 10월 25일에 등록된 하수관용 악취방지구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실리콘, 고무(라텍스) 등의 탄성재질로 이루어지고, 주로 하수관 또는 배수관 등지에 설치되어, 일방향 체크밸브 구조를 이룬 탄성 개폐부를 통해 유입부를 통해 유입된 하수는 탄성 개폐부를 통해 배출하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악취는 탄성 개폐부를 통해 차단하는 것임. 하부에는 탄성 개폐부가 상부에는 유입부가 형성된 상광하협한 원통 구조체로 이루어지며, 상기 하부에 형성된 탄성 개폐부는 5각으로 절개되어 별 형상을 이루며, 개방된 상부 가장자리에는 만곡지게 돌출된 5개의 돌출부("U")가 등간격으로 형성되어, 이들 별 형상의 탄성 개폐부와 5개의 돌출부를 마련한 유입부가 상호 조화를 이루며 일체화되어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감이 창출되도록 한 것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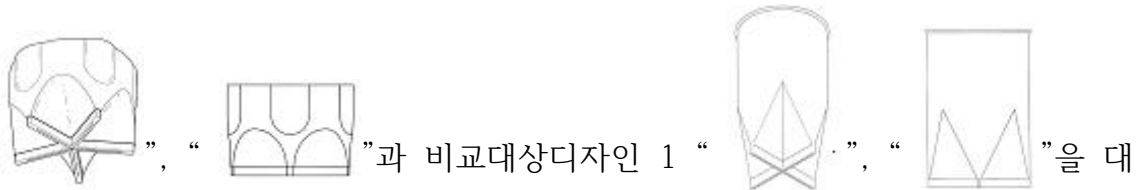
청구인은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다(2008당1246, **창작비용이성 불인정**). 그 후 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결은 취소되었다(2011허781, **창작비용이성 인정**).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13) 디자인등록번호 제30-0467354호

## 2. 판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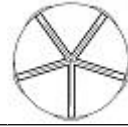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위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규정의 취지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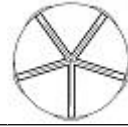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대상물품을 ‘하수관용 악취방지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사시도 및 정면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하부에 안쪽으로 움푹 파인 방사형 절개부가 다수 형성되어 있고, 몸체 바닥 부분에는 다수 개의 사각 막대 형상의 탄성개폐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 디자인은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나타난 5개의 방사형 절개부는 아치형 형상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 나타난 4개의 방사형 절개부는 삼각형 형상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탄성개폐부의 형상은 별 모양인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은 십자 모양이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상부에 U자형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디자인 1에는 외주면 둘레를 따라 띠 모양의 돌출테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사형 절개부의 개수 및 형상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탄성개폐부의 형상 차이 또한 방사형 절개부의 개수 변화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며, 위 U자형 돌출부는 평면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돌출 정도가 경미하여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 U자형 돌출부 역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그 밖에 양 디자인은 몸체의 가로·세로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그 비율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디자인 1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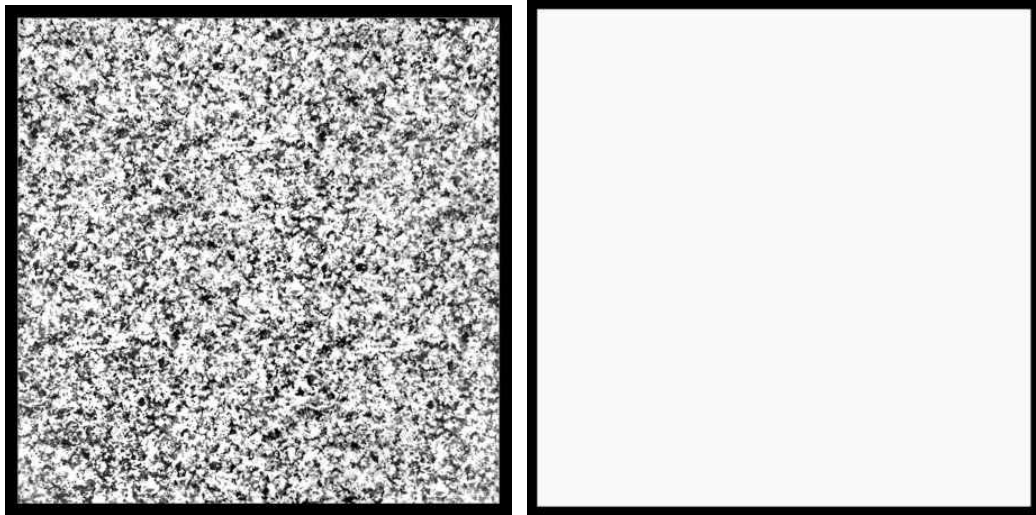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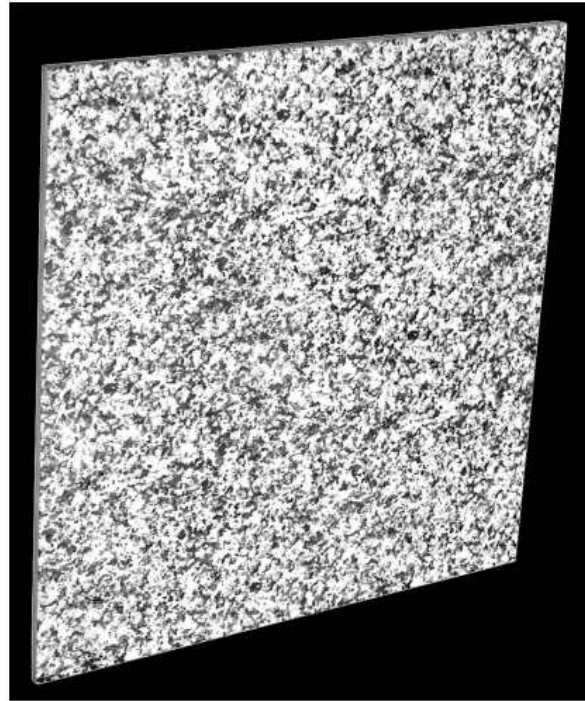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부분적으로 창작적 모티브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앞서 전력계 박스 사건(2008후2800)과 같이,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창작비용이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의 차이점이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도 앞서 전력계 박스 사건(2008후2800)과 같이, 공지디자인과 비교하여 비유사하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진도별 판례 9. 문구제도용 판재 사건 - 창작비용이성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후614 판결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14)</sup>은 2001년 11월 3일에 출원하여 2002년 10월 28일에 등록된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발포형 폴리스티렌수지, 비닐, 종이, 점착시트이고, 정면도는 보는 바와 같이 무늬가 상하좌우

14) 디자인등록번호 제30-0310809호

로 연속되는 것이며, 필요 용도에 따라 절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건축의 구조재나 내외장재로 널리 사용되어온 자연물인 화강암의 무늬 모양을 거의 그대로 물품에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창작비용이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12당3298, 창작비용이성 인정). 그 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결은 취소되었다(2014허447, 창작비용이성 불인정). 이에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 2. 판시사항

###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심결이 대상 물품을 ‘문구제도용 합성수지발포판재’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파악하면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들과는 다른 가공된 도면에 의하여 그 등록디자인의 형태를 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파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은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에서 보이는 모양이 부정형의 검은색 반점들이 흰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분포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sup>15)</sup>하고, 직육면체의 판재 형상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주지형태인 자연물로서의 화

15)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면상에 상하좌우로 연속하는 모양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단위 모양과 전체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고안되어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나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강암 무늬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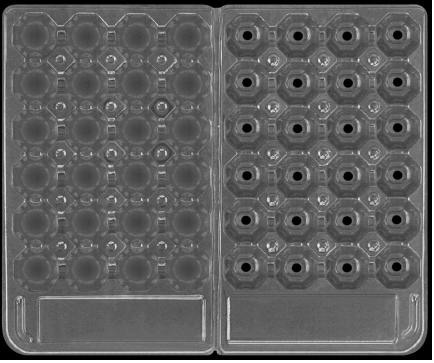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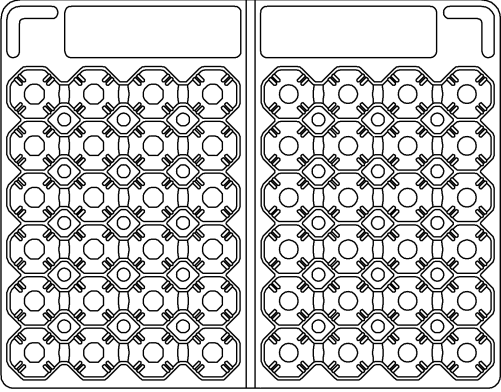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 부분의 확대도>

대상판결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주지형태인 ‘화강암 무늬’에 의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무효심판 사건이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에 표현된 무늬가 상하좌우로 연속하는 모양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단위모양과 전체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고안되어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나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은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상기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도를 확대하여 보더라도 이 역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서, 자연 상태의 화강암 무늬와 극히 유사한 단위모양을 상하좌우로 연속하도록 하는 것은 주지형태로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창작비용이성 흠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진도별 판례 10. 메추리알 포장용기 사건 - 창작비용이성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 (메추리알 포장용기)	비교대상디자인 (메추리알 포장용기)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16)</sup>은 2010년 7월 6일에 출원하여 2010년 8월 26일에 등록된 메추리알 포장용기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합성수지재이고, 투명체 또는 반투명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다수의 메추리알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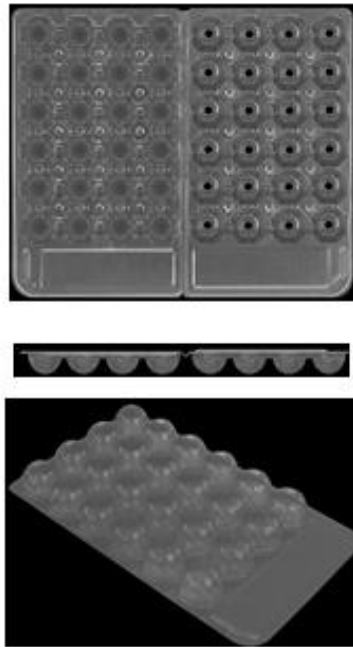
청구인은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11당3268). 그 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결은 취소되었다(2012허4858). 이에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고, 파기환송되었다(2012후3794). 그 후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법원은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2013허3654), 이에 또 다시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2. 판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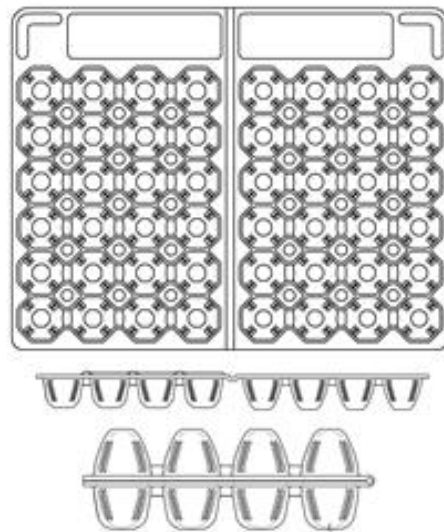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

16) 디자인등록번호 제30-0571603호

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비교대상디자인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대상 물품을 ‘메추리알 포장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 2를 대비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① 난좌 몸체의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주름이 없이 매끈한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난좌 입구부터 난좌의 하부까지 깊게 팬 두 줄의 주름이 둘레를 돌아가면서 네 군데 형성되어 있다. ②

난좌 바깥면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모두 반구형으로 같은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원뿔대와 화분 형상으로 서로 대칭하지 않는 다른 형상이다. ③ 손잡이부 형상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단 끝이 약간 구부러진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는 ‘ㄱ’자로 구부러진 형상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점 ①과 차이점 ②는 비교대상디자인 2의 덮개부 난좌와 받침부 난좌를 널리 알려진 입체적 형상으로서 주지형태에 해당하는 반구 형상으로 각 치환하여 결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고, 차이점 ③은 위와 같은 공지형태와 주지형태가 결합된 형태를 부분적으로 변형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또한 비교대상디자인 2의 대상 물품은 메추리알 포장용기이고 반구 형상은 그와 같은 포장용기 분야에도 주지된 일반적인 형상인 점과 비교대상디자인 2는 덮개부의 난좌와 받침부의 난좌가 비대칭의 형상이고 난좌의 몸체에 주름이 형성되는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곡면의 내부 공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반구 형상과 공통되는 외관적 특징을 가진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르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2의 공지형태와 반구 형상의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창작비용이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지디자인과 주지형태의 결합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교대상디자인 2의 포장용기(공지디자인)에 반구 형상(주지형태)의 난좌를 치환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 이상의 공지디자인 또는 2 이상의 주지형태가 아닌 하나의 공지디자인과 하나의 주지형태의 조합으로 창작비용이성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진도별 판례 11. 휴대폰 케이스 사건 - 1디자인 1출원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거절결정(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휴대폰 케이스)>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17)</sup>은 2010년 12월 30일에 출원하여 2013년 12월 11일에 등록된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합성수지 및 섬유재이고, 휴대폰을 경사지게 지지하며, 본 디자인의 상부에 형성된 토끼의 귀 모양의 내부에는 전화 또는 메시지 수신 시 빛을 발광하도록 램프가 내장될 수도 있고, 토끼의 귀 모양에는 이어폰의 와이어를 감을 수 있는 것이며, 본 물품의 도면중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의 점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다.

청구인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다(2011원5378, 1디자인 아님). 그 후 청구인은 이에 특허법원에 불복하였지만, 원심결은 유지되었다(2012허4872, 1디자인 아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17) 디자인등록번호 제30-0721123호

## 2. 판시사항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제1항(현행 제40조 제1항, 이하 같다)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휴대폰 케이스를 대상물품으로 하여 우측 [그림 1]과 같은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대상물품 상부의 [그림 2] 부분과 하단 뒷면에 돌출된 [그림 3]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출원번호 생략)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기능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없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2] 부분은 이를 보는 사람이 ‘토끼 귀’ 형상으로 쉽게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토끼의 전체 형상에서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 중 [그림 3] 부분이 휴대폰 케이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 또는 추상화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는 뭉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인데 이와 유사한 형상의 [그림 3]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형상의

[그림 2] 부분은 휴대폰 케이스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림 3] 부분을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림 3] 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그림 3] 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그림 2] 부분과 [그림 3] 부분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디자인’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하나의 디자인(즉, 1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특허청 심사 실무는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은 해당 부분들이 동일하거나 대칭이 되는 형태적 관련성 또는 하나 또는 연관된 기능을 가진 경우에 1디자인으로 인정하였으나, 대상판결을 통해 특정한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본 사건에서는 ‘토끼 형상’)에도 1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은 최초 디자인도면의 [디자인의 설명]이나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에 디자인의 창작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도면만으로 1디자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진도별 판례 12. 간이스프링클러 사건 - 신규성 상실의 예외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등록무효(디)]>

2012.4.3. 공지 (비교대상디자인 10)	2012.6.11. 공지 (비교대상디자인 1)	2012.9.28. 출원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18)</sup>은 2012년 9월 28일에 출원하여 2012년 11월 14일에 등록된 간이형 스프링클러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이고, 주로 건물 내부에 설치되며, 화재 발생시 저수된 소방수를 분사하여 화재진압을 할 수 있고, 정비 및 점검이 용이하게 상부가 개방 되어지는 구조이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012년 4월 3일에 공지된 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 10)에 대해서만 출원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 이성 흠결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다(2013당118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 그 후 청구인은 이에 특허법원에 불복하였고, 원심결은 취소되었다(2014허2184, 신규성 상실의 예외 불인정). 이에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2. 판시사항

구 디자인보호법 (2013. 5. 28. 법률 제11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8) 디자인등록번호 제30-0668925호

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그 디자인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의 6개월의 기간 이내에 여러 번의 공개행위를 하고 그중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들에게까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이란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을 말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출원서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란에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0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비교대상디자인 10은 외관 또는 심미감에 영향을 주는 요

소인 정면 상단부의 개폐손잡이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동일한 미감을 일으키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1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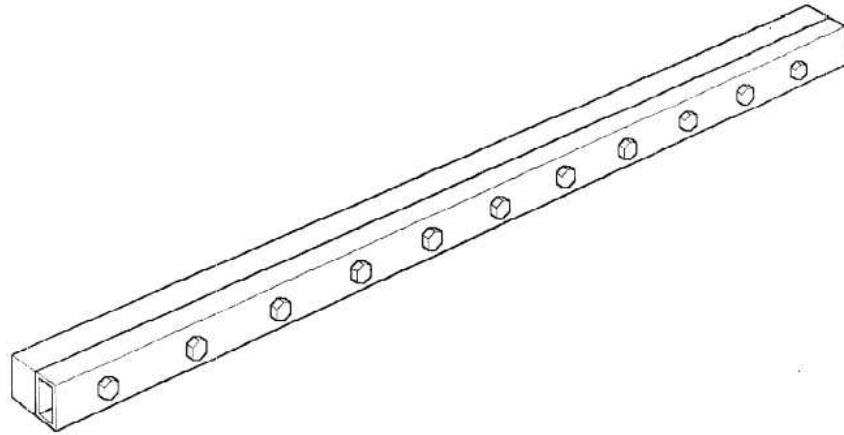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출원 전에 여러 번의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 최초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이후에 공지된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속하는 디자인이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점을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대상판결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대대적으로 개정된 2014년 7월 1일 시행법 이전의 사건이지만, 현행법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 즉 출원 전에 여러 번의 공지행위가 있을 때 최초 공지디자인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과 만약 여러 번의 공지행위가 있을 때 동일성을 벗어나는 디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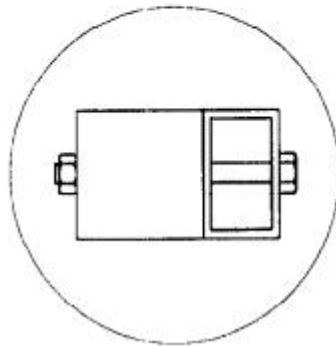
따라서 출원 전에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지되었거나, 또는 비유사하더라도 창작비용이성 등 등록 유효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지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모두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그 중요도가 높다.

진도별 판례 13.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 사건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용이창작)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후2037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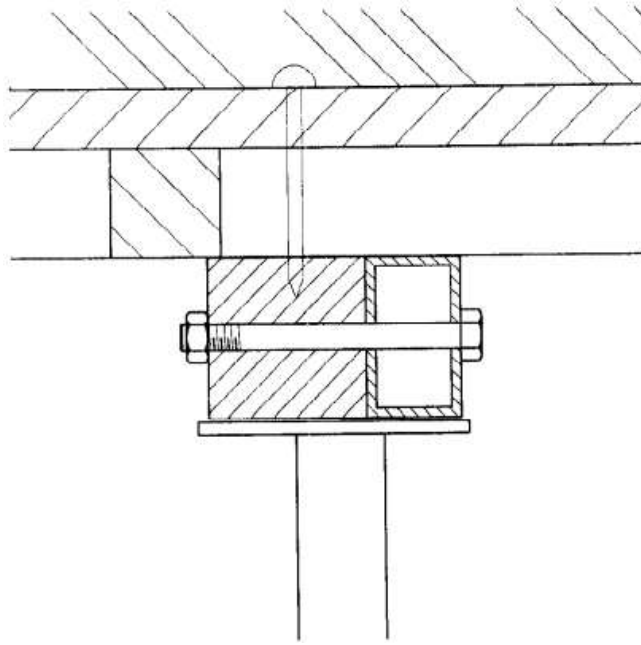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건축용 거푸집 받침대)>

**평면도 (평면확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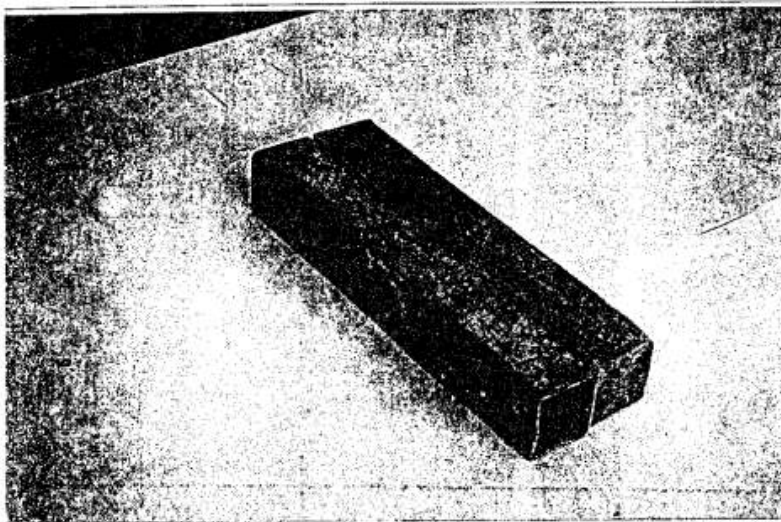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확대)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고도면>

도면 대응 사시사진



(가)호의장의 설명

(가)호의장은 도면 대응 사진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거꾸집 받침대로서 가설되어진 합판거꾸집을 해체할 시 받침대에 의한 낙하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1994년 4월 이전에 널리 알려져 있던 사각통 형상의 강관과 사각기둥 형상의 목재를 서로 맞대어서 못으로 박아 일체로 한 것이다.

그 길이는 대략 26cm이다.

<확인대상디자인>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19)</sup>은 1999년 1월 15일에 출원하여 1999년 10월 8일에 등록된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금속 및 목재이고, 금속재 받침대와 목재 받침재를 보울트로 체결하여 일체로 구성한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을 청구하였고, 인용되었다(2001당2047,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그 후 피청구인은 특허법원에 불복하였지만, 원심결은 유지되었다(2002허2976,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이에 피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 2. 판시사항

원심은, 명칭을 "건축용 거푸집 받침대"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이전부터 건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과 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서포터와의 사이에 강관과 받침용 목재를 끼워 넣어 사용해 오고 있었고, 그 중 강관의 용도는 받침용 목재의 강도를 보완하는 것이며, 목재의 용도는 거푸집의 고정을 위한 못박음과 서포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강관과 받침목재는 모두 사각기둥의 형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강관 및 받침목재의 사각기둥 형상을 널리 알려진 체결수단인 나사를 이용하여 단순 결합한 것으로서 그 형상 역시 사각기둥이어서 별도의 심미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므로 디자인적 창작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어 등록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적법한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의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등록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19) 디자인등록번호 제30-024933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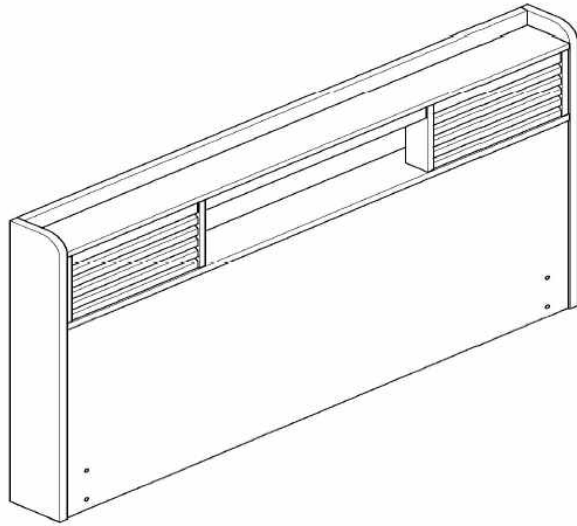
그러나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따르니,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각통 형상의 강관과 사각기둥 형상의 목재를 서로 맞대어 통상적인 형태의 뿔으로 박아 일체화시킨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하고 있는 피고의 실시디자인은 그러한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미감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실시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취지의 심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준 심리미진,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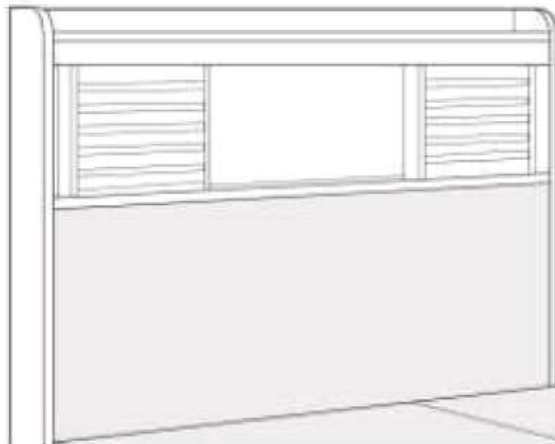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은 가능하지만, 창작비용이성 부정은 불가능하다는 점, 그럼에도 확인대상디자인(실시디자인)이 창작용이하다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진도별 판례 14. 침대용 헤드 사건 - 신규성 상실의 예외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관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침대용 헤드)>



<확인대상디자인(침대용 헤드)>



<선행디자인 2(침대용 헤드)>

## 1. 사실관계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20)</sup>은 2018년 10월 24일에 출원하여 2019년 5월 21일에 등록된 침대용 헤드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목재, 금속 및 합성수지재이고, 헤드의 상단부 내측에 밝기 조절이 가능한 무드등(LED)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선행디자인 2는 2018년 10월 23일에 공지되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디자인권자는 답변서를 통해 선행디자인 2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법하게 주장하였다.

청구인(디자인권자)은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는 피청구인에게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지만,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 유사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19당3417, 자유실시디자인 인정). 그 후 청구인(디자인권자)은 이에 특허법원에 불복하였지만, 원심결은 유지되었다(2020허5412, 자유실시디자인 인정). 이에 청구인(디자인권자)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 2. 판시사항

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선행디자인에 기초하여 자유실시 디자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은 디자인보호법의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 등 관련규정의 문언과 내용, 그 입법 취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음을 전제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을 대비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33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

20) 디자인등록번호 제30-1008024호

인은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디자인보호법 제36조)을 두었다(대법원 2017. 1.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2)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디자인으로 등록되면 위 예외 규정의 적용없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와 동일하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즉,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이 등록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3)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그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제3자가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은 위와 같은 입법적 결단을 전제로 제3자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6조 제2항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준수해야 할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고,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출원일 자체가 소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하였다.

4) 한편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참조), 이는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을 공지디자인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법리는 기본적으로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공의 영역에 있던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아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의 독점.배타권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

거가 된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제3자의 보호 관점에서 보더라도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시기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을 받아 등록된 이상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제3자와의 이익균형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디자인보호법이 디자인권자와 제3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0조)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별다른 창작적 기여를 하지 않은 제3자에게 법정 통상실시권을 넘어서는 무상의 실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정해진 등록디자인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를 근거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등록이 유지되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어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용의 근거가 된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과 자유실시디자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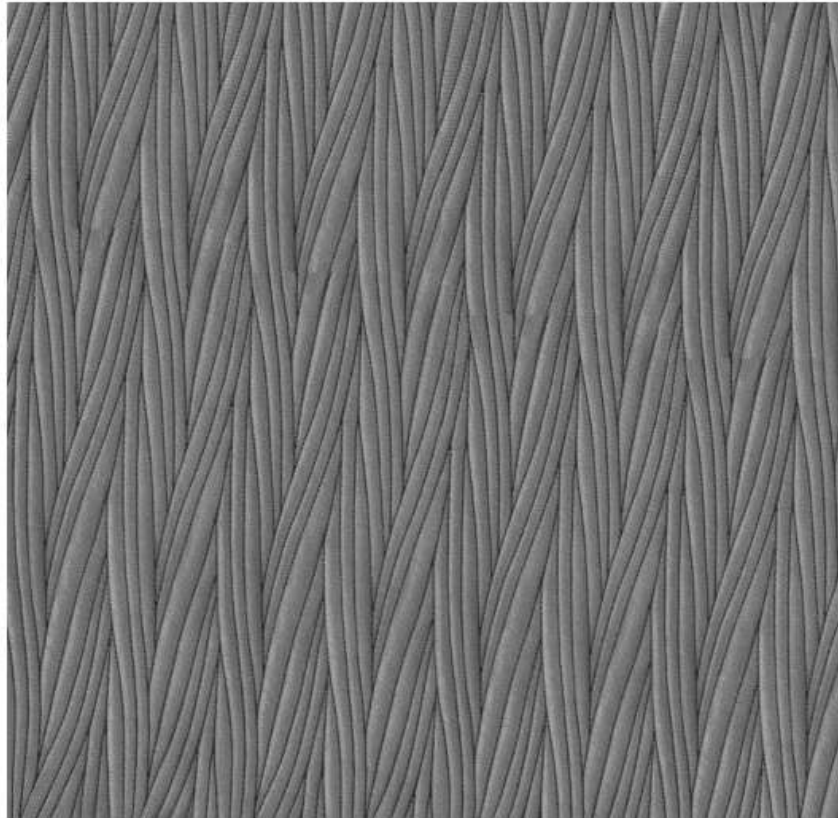
3. 시사점

대상판결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 공지디자인을 기초로 제3자가 자유실시디자인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심판원과 특허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 등록디자인은

사실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디자인권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더라도 등록요건 판단시에만 비공지 효과가 생기고, 권리범위 판단시에는 동일유사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으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여 등록받은 디자인권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줄 것이 너무나 명백했다.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 이론은 무효심판 전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된 법리이다. 그럼에도 법이 허용한 등록디자인의 효력마저 제한하도록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사건으로는, 대상판결을 적극 지지한다.

진도별 판례 15. 직물지 사건(2009후2968) - 이용관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직물지)>



<이 사건 확인대상디자인(직물지)>

## 1.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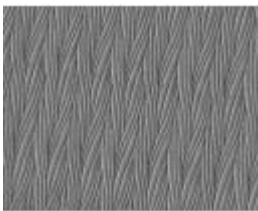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sup>21)</sup>은 2007년 10월 22일에 출원하여 2008년 3월 12일에 등록된 직물지에 관한 것이다. 재질은 자카드 직물이고, 표면에 다소 미세하게 엠보싱한 것이며, 이면은 무모양이고,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는 것이며, 커튼이나 이불 등의 원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디자인권자)에게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을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다(2008당2980, 권리범위에 속함). 그 후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불복하였지만, 원심결은 유지되었다(2009허3466, 권리범위에 속함).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불복하였다.

## 2. 판시사항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함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명칭이 “직물지”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표면도와 이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의 이면은 아무런 모양이 없는 점에서 동일하나, 그 표면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은 여러 가닥으로 된 실 형상의 선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꼬이듯이 보이도록 한 ‘V’자 모양을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루어져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 “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바탕 모양에 큰 나뭇잎 모양이 위와 아래로 서로 엇갈려 반복

21) 디자인등록번호 제30-0483945호

하여 이루어져 있고 황색 계통의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 ‘V’자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일부 반복하여 이루어지다가 그 사이 사이에 큰 나뭇잎 모양이 위와 아래로 서로 엇갈리게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 혼연일체로 결합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인 위 ‘V’자 모양이 상하좌우로 연속적으로 반복된 부분 중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용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이용관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 시사점

대상판결은 디자인의 이용관계, 구체적으로 물품의 이용이 아닌 형태의 이용에 관하여 판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기존 탁상용 전기스탠드 사건(99후888)은 선등록 부품(부분품) 디자인과 후 실시 완성품 디자인 간에 물품의 포함 관계를 중심으로 이용 관계를 긍정하였으나, 본 대상판결은 선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모두 직물지이고, 물품의 포함 관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형태의 포함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의 요부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부분이 손상되어 이용 관계를 부정하였지만, 형태의 이용 관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고,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형태의 이용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대상판결은 디자인의 이용관계의 성립요건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디자인보호법 진도별 주요 1차 기출문제

[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및 개괄 ]

1. 다음 중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제도는 몇 개인가? [39회 기출]

- |          |               |          |
|----------|---------------|----------|
| ㉠ 이의신청제도 | ㉡ 통상실시권허락심판제도 | ㉢ 심사청구제도 |
| ㉣ 정정심판제도 | ㉤ 출원공개제도      | ㉥ 변경출원제도 |
| ㉦ 보정각하제도 | ㉧ 출원공고제도      |          |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해설) ㉠㉡㉢㉣ 심사청구제도, 정정심판제도, 변경출원제도, 출원공고제도는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이다. 따라서 ㉤, ㉥, ㉦, ㉧ 4개이다. 정답) ③

2.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다음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40회 기출]

- ①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이나 상표는 부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공지 또는 공연실시 발명의 지역적 기준과 공지 또는 공연실시 디자인의 지역적 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고려하여 판단된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시 도면의 제출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④ 디자인보호법상 정정심판제도나 정정무효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설정등록된 디자인 및 특허는 원칙적으로 모두 등록공고되며, 등록공고된 양 권리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특허법 32조, 실용신안법 6조2호, 상표법 34조1항4호 및 디자인보호법 34조2호 참고. ② 특허법 29조1항1호 및 디자인보호법 33조1항1호 참고. ③ 실용신안법 8조2항 및 디자인보호법 37조2항 참고. ④ 디자인보호법은 그 보호객체의 특성상 정정심판 및 그에 따른 정정무효심판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⑤ 설정등록된 디자인 및 특허는 원칙적으로 등록공고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정답) ⑤

[ 디자인의 정의 ]

3. 다음 보기에서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만을 묶은 것은? [43회 기출]

- (가) 포장한 상태의 내의
- (나) 찹쌀로 만든 떡
- (다) 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와 무관한 입체상 홀로그램
- (라)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
- (마) 상품권
- (바) 향수

- ① (가), (나), (마)                      ② (가), (라), (바)                      ③ (나), (다), (마)
- ④ (나), (라), (마)                      ⑤ (다), (마), (바)

해설) (가) “포장한 상태의 내의“는 포장지로도 또는 내의로도 특정될 수 있는 바 구체성이 없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라) 찹쌀로 만든 떡, 얼음으로 만든 장식물은 비록 그 원재료로 표현되었으나 전자는 떡, 후자는 장식물로 특정될 수 있다. (다) 입체상 홀로그램(기기 조작 또는 기능 발휘와 무관함)은 제2조 제2호의2의 ‘화상’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마) 상품권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바) 향수 자체는 그 대상이 특정될 수 없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향수병은 병 자체의 형태가 특정될 수 있는 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나), (라), (마)는 디자인권의 대상이 되는 디자인으로 성립된다. 정답) ④

4.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45회 기출]

< 보 기 >

ㄱ. 판화가 인쇄된 달력  
ㄴ. 독특한 방식에 의한 포장형태  
ㄷ. 도로의 입체교차로  
ㄹ.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  
ㅁ. 토지에 설치되는 송전탑  
ㅂ. 형상이 연속하는 철사  
ㅅ. 아이스캔디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해설) ㄱ. 판화가 인쇄된 달력은 판화 모양이 그려진 “달력”이라는 구체적인 물품으로 특정된다.○  
ㄴ. 포장형태는 구체적인 물품으로 특정될 수 없다. 즉, 임의의 물품의 2차적 형태일 뿐, 거래실정상  
구체적인 물품으로 특정될 수 없다.× ㄷ. 도로 또는 교차로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ㄹ. 품종을 개량한 장미꽃, 즉 자연물은 현행 심사실무상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  
로 보고 있다.× ㅁ. 송전탑은 토지에 설치되는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ㅂ. 형상이 연속  
하는 철사는 “철사”라는 구체적인 물품으로 특정될 수 있다.○ ㅅ. 아이스캔디는 정형성이 인정되고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 즉 ㄱ, ㄷ, ㅂ, ㅅ, 총 4개이다. 정답) ③

[ 부분디자인 ]

5. 다음은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39회 기출]

- ① 부분디자인의 예로는 커피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을 들 수 있다.
- ②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그 대비 대상이 되는 전체디자인의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한다.
- ③ 출원서에는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하고,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물품 중 모양 또는 색채만의 부분디자인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중 일부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합성물의 구성각편(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은 부분디자인으로 인정되어 부분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①③ 물품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커피잔의 손잡이, 병의 주둥이,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도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게 하였다.(2조1호 괄호) 부분디자인등록출원시에는 일반적인 디자인등록출원과 달리 출원서에 부분디자인출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하여야 한다.(40조2항 참고) ② 디자인등록출원전 전체디자인이 공지 등이 된 경우 그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전체디자인에 포함된 부분과 동일 또는 유사하면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한다. 전체디자인이 공지된 경우에도 그 전체디자인의 일부분도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일부로서 그 물품의 일부의 형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바,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모양 또는 색채만의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부분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틀린 지문이다. “화상”의 경우 모양 또는 색채만의 부분디자인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의 구성물품은 부분디자인으로 인정되고(제2조 제1호 괄호),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원칙적으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물품의 부분과 달리 볼 필요가 없는 바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정답) ④

[ 글자체디자인 ]

6.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51회 기출]

- ① 2005년 7월 1일자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산업구조의 변천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과 함께 글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현행 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 ② 글자체 디자인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가 있다.
- ③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심사등록출원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도면은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⑤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3자의 일정한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해설) ① 2005년 7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은 산업구조의 변천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글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현행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했지만,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여전히 물품성을 인정하진 않고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되는 글자체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가 있다. 이들 각각을 ‘한 별’의 글자체로 구분할 수 있다(2조2호 참조). ③ 2012후603, 2012후597 참조. ④ 글자체는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 구분 중 제18류에 해당하므로 심사등록출원해야 하며,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하여 제출하거나, 폰트파일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94조제2항 참조. 정답) ①

[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

7.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회 기출]

- ① 완성품과 부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물품으로 취급한다.
- ② 안경과 안경테는 유사한 물품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 ③ 부품 출원 전에 완성품이 출원되어 있는 경우 부품은 확대된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 ④ 부품 출원 전에 완성품이 출원되어 있는 경우 부품은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반됨이 원칙이다.
- ⑤ 완성품에 관한 디자인권이 있는 경우 제3자가 그 완성품에 포함된 부품과 동일 유사한 부품을 업으로 판매하는 것은 완성품 디자인권의 간접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해설) ①② 심사기준은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를 원칙적으로 상호간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여 비유사물품으로 보지만 안경과 안경테의 관계와 같이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④ 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부품인 경우에는 후출원은 원칙적으로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부품이 완성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33조3항) 한편 전체로서 비유사한 관계이므로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니다. 따라서 ④번은 틀린 지문이다. ⑤ 부품이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 간접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114조). 정답) ④

[ 동적디자인 ]

8. 동적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1회 기출]

- ① 동적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지한 상태에서부터 변화후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물품의 형태가 그 기능에 기하여 변화하는 경우 동적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 ③ 동적디자인은 물품의 정형성(특정성)의 예외로서 변화에 일정성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
- ④ 동적디자인권은 변화 전후에 걸친 각 상태마다의 권리의 집합이다.
- ⑤ 동적디자인의 경우에는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및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할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본다.

해설) ①②③ 동적디자인의 성립요건은 그 물품의 형태가 기능에 기초하여 시각적으로 변하고, 정지 상태에서부터 변화후의 상태가 쉽게 예측될 수 없어야 하며, 그 변화의 패턴이 일정해야 한다. ④ 동적디자인은 물품의 형태의 변화에 창작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지만 등록된 이후에는 그 동작의 내용을 포함한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변화 전후에 걸친 각 상태마다의 권리의 집합으로 볼 수는 없다. ⑤ 동적디자인의 유사판단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은 1) 동적디자인과 정적디자인간에는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가 정적디자인과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다만, 동작의 내용이 특이하면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본다. 정적디자인이 동적디자인의 정지상태 또는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와 유사하면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한편, 2) 동적디자인 상호간에는 정지상태, 동작중의 기본적 주체를 이루는 자태, 동작의 내용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정답) ⑤

[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도면 ]

9.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6회 기출]

-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색채가 백색 및 흑색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백색 및 흑색에 대하여 채색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이 입체를 표현한 경우에 정면도 이외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도면에 갈음하여 디자인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색채를 표현한 경우에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가 투명한 경우가 있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사용목적, 사용방법, 재질 또는 크기 등에 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①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또는 사진에 색채를 가하는 경우에 백색·회색 또는 흑색중의 어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의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백색 및 흑색을 모두 생략할 수 없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 일시적으로 도형 등이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의 경우에는 “정면도를 제외한 도면”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부분디자인의 경우 도면만 제출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즉, 부분디자인의 경우라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특정될 수만 있다면 도면이 아닌 사진 또는 견본도 제출이 가능하다. ④ 물품의 종류 및 외관에 따라 투명하게 표현되는 것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모두 가능하다. ⑤ 도면·사진 또는 견본만으로는 그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의 관한 설명을 디자인의 설명란에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그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재질 또는 크기 등을 도면, 사진 또는 견본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 그의 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①

[ 공업상 이용가능성 ]

10.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51회 기출]

-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 ③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 ④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면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 ⑤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다량생산 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해설) ①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의 정의로 타당하다. ②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이란 도면 표현에 있어서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요지가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물품의 사용목적·사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 ③ 부분디자인의 경우 해당 물품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구비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그 물품의 부분을 보호받는 것이므로 지문과 같은 전제는 옳지 않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화면디자인의 정의로 타당하다. ⑤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은 부동산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반복생산가능성이나 운반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등록될 수 없다. 정답) ③

[ 디자인의 유사 판단 ]

11.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52회 기출]

- 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 ④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설) ④ 2010후265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①②③⑤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 및 판례에 비추어 옳다. 답안) ④

12. 다음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39회 기출]

- ① 동일한 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하며,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유사하고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 ②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고, 동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은 좁게 본다.
- ③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잘 보이는 부분에 비중을 두어 판단한다. 다만, 잘 안보이는 곳이라도 그 곳에 고안의 핵심이 있고 수요자의 관심이 변화하는 현상이 보이면 그 곳에 비중을 두어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④ 기능, 구조, 내구력, 제조방법은 그 자체가 외관으로 표현되지 않은 한 유사판단의 요소로 될 수 없다.
- ⑤ 동적(動的) 디자인 상호 간에 있어서는 그 정지상태, 동작의 내용 및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등을 전체로서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해설) ①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지만 기능이 상이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창작적 가치가 높은 디자인이라면 그 보호범위가 넓어야 할 것이다. 유사범위는 결국 그 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직결된다. 따라서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은 넓고, 동종류의 것이 많이 나오는 즉, 창작적 가치가 작은 디자인이라면 유사의 폭은 좁다. ③ 양 디자인의 유사여부는 외관을 통해 판단하므로 원칙적으로 잘 보이는 면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외관상 쉽게 관찰될 수 없는 부분이라도 일반수요자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디자인의 유사판단요소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은 일반수요자의 거래실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④ 기능, 구조, 내구력, 제조방법처럼 디자인의 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요소들은 원칙적으로 유사판단의 요소로 고려되지 않지만 거래관념상 외관으로 표현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유사판단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될 수는 있다. ⑤ 동적디자인 상호간에 있어서는 그 정지상태, 동작 중의 기본적인 주체를 이루는 자태 뿐만 아니라 동작의 내용도 유사판단의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적디자인은 그 동작의 내용에도 미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①

[ 신규성 ]

13.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42회 기출]

- (ㄱ) 외국에서 공지된 디자인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도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취급한다.
- (ㄴ) 간행물이 특허청의 자료실이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포되었다고 볼 수 없다.
- (ㄷ) 출원디자인에 대한 신규성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당해 디자인의 창작일이 아니라 당해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 (ㄹ)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있어서,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라 하겠으므로,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ㅁ)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타인의 조각과 형상, 모양을 동일하게 한 장식물에 관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거절된다.

① ㄱ, ㄹ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해설) ㉠ 신규성의 판단자료는 외국에서 공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포함한다(33조1항각호).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 간행물이 특허청의 자료실이나 도서관에 비치되었다면 불특정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반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디자인등록출원일이 아니라 출원시이다. ㉣ 85후47.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 신규성은 공지 등이 된 디자인과 출원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양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 지문에서 공지된 “조각”은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물품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지된 “조각”과 출원된 “장식물”은 상호간 비유사물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신규성 상실을 이유로 거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정답) ①

[ 창작비용이성 ]

14. 다음은 창작용이성(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심사등록대상물품인 경우에 한한다.) [44회 기출]

- 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라 함은 공지·공용의 디자인 또는 주지의 형상·모양 등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가하여진 변화가 단순한 상업적 변화에 지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나) 창작용이성의 판단범위는 신규성 판단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 간에서만 판단한다.
- 다) 2004년 디자인보호법 개정에서는 국내외에서 공지된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창작용이성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 라) 디자인보호법상 출원디자인에 관한 신규성과 창작용이성의 판단은 모두 디자인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마) 출원디자인이 공지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한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과 제33조제2항을 동시에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 바) 심사실무상 명백한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주지의 디자인을 창작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 사) 자연물을 기초로 한 창작인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

- ① (가), (다), (사)      ② (나), (다), (사)      ③ (나), (라), (마)
- ④ (라), (바), (사)      ⑤ (나), (마), (바)

해설) (나) 창작비용이성 규정은 물품이 비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다) 2005년 7월 1일 시행법(2004년 개정법)은 공지디자인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창작비용이성 판단의 기초자료로 추가하였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사) 자연물을 기초로 창작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 특이한 경우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결론적으로 틀린 지문은 (나), (다), (사)이다. 정답) ②

[ 확대된 선출원주의 ]

15. 디자인보호법상 소위 확대된 선출원(제33조 제3항)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한함) [43회 기출]

- ① 출원의 선·후를 가릴 수 없는 동일(同日) 출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대하여는 제1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③ 당해 디자인등록출원과 선출원된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심사실무상 타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중 디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는 사용상태도 등 참고도면도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⑤ 선출원된 디자인 중에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① 선출원주의(46조) 규정과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동일(同日)자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3조3항). ② 51조1항. ③ 33조3항 단서. 당해 출원인과 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4년 7월 1일 시행).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심사기준 참고. 부분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파선으로 표현된 부분 등을 포함한 전체디자인 중에 후출원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전체를 표현하는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우측면도, 사시도 등의 필수도면과 디자인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전개도, 단면도, 확대도 및 사용상태도 등은 후출원된 부분디자인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는다. ⑤ 심사기준 참고. 선출원된 디자인 중에 후출원된 디자인에 상당하는 부분이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어야만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③

[ 부등록사유 ]

16. 디자인보호법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48회 기출]

- ①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경우, 당해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혼동은 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물품 상호간의 혼동을 말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① 34조1호, 2호, 4호의 경우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3호의 경우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34조2호는 디자인의 전부 외관뿐만 아니라 일부 외관을 대상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③ 34조3호에 있어서, 혼동이라 함은 출처의 혼동, 즉 형태 그 자체의 유사성에 따른 혼동이 아니라 형태로부터 파악되는 그 물품의 출처의 혼동을 의미한다. 참고로, 비교되는 양 디자인의 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물품 상호간의 혼동은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일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표준화된 규격에 의해 정해진 형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형상이 그 물품의 기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면 34조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규격봉투). 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는데(34조4호), 이 경우 그 디자인의 모양 및/또는 색채의 부가 여부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그 대상 물품의 “형상”만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즉, 대상 물품의 형상이 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고려할만한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본 호가 적용된다. 정답) ③

[ 관련디자인 ]

17. 관련디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9회 기출]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등록된 관련디자인 또는 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③ 관련디자인도 기본디자인과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진다.
- ④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면 관련디자인권도 같이 소멸하나,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관련디자인권이 소멸되어도 기본디자인권에는 영향이 없다.

해설) ① 48조2항. ② 35조2항. ③ 35조 및 92조 참조.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④ 관련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과는 별개의 권리범위를 가지므로 독자적으로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35조는 무효사유에 속한다(121조). ⑤ 기본디자인권이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소멸하더라도 관련디자인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정답) ⑤

18.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3회 기출]

- 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하므로 그 디자인권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만을 포기할 수 없다.
- ② 디자인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후에 당해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있을 때에는 그 질권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③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반드시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 ④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권자가 그 디자인이 공지된 이후에는 그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등록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된다.
- 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에 거절이유가 있게 되면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해설) 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별개이므로 그 디자인권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기본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권은 권리 주체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기본디자인권에 대한 질권은 관련디자인권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족하다. ④ 35조2항.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⑤ 기본디자인이 거절이유가 있어서 거절결정되더라도, 관련디자인은 48조2항의 보정에 의해 단독디자인으로 심사받아 등록될 수 있다. 정답) ④

[ 선출원주의 ]

19.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심사등록출원에 한함) [42회 기출]

- ① 타인뿐만 아니라 동일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출원에 대해서도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같은 날에 甲은 디자인A를, 乙은 디자인A와 유사한 디자인A'를 각각 출원하였다. 그 후 甲이 디자인등록출원a를 포기한 경우, 乙은 디자인등록출원a'에 대해 다른 등록요건의 흠결이 없으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취하 또는 반려된 때에는 선출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선출원주의는 후출원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를 판단하지만, 후출원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 ⑤ 부품X가 선출원이고 부품X를 포함한 완성품Y가 후출원인 경우, 부품과 완성품 간에는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이 경우 완성품은 등록될 수 없다.

해설) ① 46조1항 및 2항. ② 같은 날에 타인간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경합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출원이 포기 등이 되어 선출원의 지위가 없게 되면 남은 하나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있다(46조2항 및 3항). ③ 46조3항. ④ 후출원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심사단계에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이후 선출원 등록디자인간의 유사범위 간에 저촉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95조2항). ⑤ 완성품과 부품은 원칙적으로 비유사한 물품이므로 양자간에 선출원주의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완성품에 관한 후출원은 등록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정답) ⑤

[ 1디자인 1출원주의 ]

20. 디자인보호법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에 적합한 것은? [46회 기출]

-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초콜릿”이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은박지로 포장한 초콜릿을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승용차 및 자동차완구”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승용차를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
- ③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시계가 부설된 라디오”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시계를 겸용할 수 있는 라디오를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
-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자전거”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자전거용 페달을 나타낸 것이 하나 기재되어 있는 것
- ⑤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연필”이라고 기재되고 첨부도면에는 형상이 동일한 청색심의 연필과 적색심의 연필을 각각 나타낸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것

해설) ①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은 은박지 및 초콜릿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40조1항을 만족하지 못한다. ② 이 경우 당해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은 승용차에 관한 디자인이지만,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2 이상의 물품명이 병렬하여 기재된 것이므로 40조1항을 만족하지 못한다. ③ 심사기준은 “○○부설○○”은 40조1항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④ 이 경우 당해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은 자전거용 페달을 도시한 것으로, 이는 거래통념상 “자전거용 페달”이라는 물품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자전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40조1항을 만족하지 못한다. ⑤ 이 경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연필)은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도면에 표현된 색채가 상이한 연필들은 다른 형태를 가진 디자인이므로 2디자인에 해당하여, 40조1항을 만족하지 못한다. 정답) ③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

21. 다음 중 원칙적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될 수 없는 것만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40회 기출]

- 가) 디자인을 기재한 도면 등에 의하여 동일한 형상의 물품을 반복생산할 수 없는 경우
- 나) 등록출원하고자 하는 여성용 원피스가 출원일 전에 전국 일간지에 게재된 경우
- 다) 자신의 디자인을 표현한 물품을 박람회 출품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 라) 아동용 의복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선출원되어 있었던 경우
- 마) 출원된 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에 있어서 가하여진 변형이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경우

- ① 가나타      ② 가타라      ③ 가라마      ④ 나다라      ⑤ 나라마

해설) 62조2항. ㉞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에 해당한다.(33조1항본문) 이는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 ㉡ 신규성 상실 사유이다.(33조1항2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절이유가 될 수 없다. ㉢ 박람회 출품후 12개월이 경과한 이후라면 신규성 흠결로 거절된다.(33조1항1호) 따라서 원칙적으로 거절이유가 될 수 없다. ㉣ 선출원주의는 원칙적으로 거절이유가 될 수 없다.(46조) ㉤ 주지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창작비용이성 위반은 원칙적으로 거절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 ㉢, ㉣이다. 정답) ④

[ 복수디자인등록제도 ]

22. 甲은 2024년 12월 21일 바지(제2류)에 관한 디자인 3건을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4회 기출]

- ① 甲은 바지에 관한 디자인을 각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해야 하며 출원서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취지 및 디자인 수를 기재하고 각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甲의 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 디자인과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전체가 거절결정되나 적법하게 등록된 이후에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 ③ 도면상 디자인의 수가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수보다 부족한 경우 甲은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수에 따라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 ④ 甲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시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에 대해서 비밀디자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甲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① 37조 및 41조. ② 62조5항.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③ 도면상 디자인의 수가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수보다 부족한 경우 甲은 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수에 따라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으로 취급되므로 적절치 않다. ④ 43조1항 후단. ⑤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등 보정이 가능하므로(48조4항), 분할출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정답) ②

[ 한 별 물품의 디자인제도 ]

23. 한 별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0회 기출]

- ① 동시에 사용된다는 것은 반드시 일시에 사용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관념적으로 연상하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 ② 한 별의 깃연용구 세트에 있어서 재떨이, 담배갑, 라이타 및 받침대가 상호집합되어 하나의 거북이 형상을 표현한 것은 형태적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③ 한 별 물품과 그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동일자에 출원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 ④ 한 별 물품의 대상에 따라 심사등록출원 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하다.
- ⑤ 한 별 물품의 구성물품 어느 하나라도 공서양속 위반시에는 한 별 물품 출원 전체가 거절된다.

해설) ① 동시에 사용되는 지 여부는 거래관념상 인정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② 한 별의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이 하나의 거북이 형상으로 보인다면 한 별 전체로서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③ 동일자 출원에 대해 협의제가 적용되는 것은 양 출원디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46조2항) 그런데 한 별의 물품과 그 구성물품은 상호간 비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협의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둘 다 등록받을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출원대상물품은 시행규칙 별표5에서 92개 물품이 규정되어 있고, 한 별의 물품 또는 구성물품에 따라 심사등록출원 또는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가능하다. ⑤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만으로도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③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24.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적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심사등록출원에 한함) [42회 기출]

- ① 甲이 2024년 9월 10일 일본 내에서 개최된 어느 디자인 전시회에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A를 발표하고, 2024년 12월 7일 일본 특허청에 디자인A와 유사한 디자인A'를 디자인등록출원하였다면, 甲은 디자인A와 유사한 디자인A'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6월 7일 전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야 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이익 및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여러 번 당해 디자인에 대한 공개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디자인의 최초 공개일부터 12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③ 자기의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자 중 1인이 신규성상실의 행위를 한 때에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디자인이 공지 등이 된 사실을 알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설) ① 조약우선권주장은 우선권이 발생된 시점(2024년 12월 7일)부터 6월 이내의 기간에서 인정되므로 우선권이 발생된 시점 이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甲이 디자인A를 일본 내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 발표한 시점은 2024년 9월 10일이고, 디자인A와 유사한 디자인A'에 대해서 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이익 및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적법하게 등록받기 위해서는 우선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 및 공지시점부터 12월이내에 각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우선권이 발생된 시점부터 6월 이내인 2025년 6월 7일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조약우선권주장 및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36조 및 51조). ② 만약 최초 공개일부터 12월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두 번째 이후의 공개일부터 12월 이내에 절차를 취하게 되면 최초 공개에 의해 신규성 흠결로 등록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35조1항.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등록 후라도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무관하게 등록받을 수 있다. ④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36조1항)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가진 자라면 공유자 중 1인이라도 가능하다. 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원하는 경우라도 그 공지 등이 된 날부터 12월이 경과하기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이 진행되어야 한다(36조1항).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정답) ⑤

[ 조약우선권주장 ]

25.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5회 기출]

- ① 제1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기간은 1년이다.
- ②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46조(선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제1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 ④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증명서류와 그 번역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간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원내용의 동일성은 실질상의 동일성을 말한다.

해설) ① 51조1항. 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1국출원일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우선권주장은 2국출원의 일부 등록요건 등의 판단시점을 1국출원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상기 출원의 등록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③ 51조1항. 33조2항 및 3항도 포함. 우선권주장에 의해 출원인은 등록 절차 및 권리 유지면에서 불이익한 효과를 받지 아니한다.(조약 4조B) ④ 51조4항. 번역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51조1항. 1국출원과 2국출원의 디자인 간에는 형식적인 동일성이 아닌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제1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출원이라는 형식으로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대한민국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정답) ⑤

[ 보정 ]

26.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회 기출]

- ①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불비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 또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하여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다.
- ⑤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처음부터 보정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해설) ① 18조 및 47조. ② 48조2항. ③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거절결정”인 경우에는 차후 재심사 청구기간 등 보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④ 13조. 보정은 공동출원인 중 일부 출원인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⑤ 48조5항 참고.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정답) ⑤

[ 분할출원 ]

27.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3회 기출]

- ①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이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한 자는 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1조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 ④ 시계줄이 부착된 손목시계에 관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이를 손목시계 본체와 시계줄로 각각 분리하여 1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 ⑤ 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 출원의 분할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과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

해설) ①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이 42조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디자인출원 위반이므로 분할이 가능하다.(50조1항1호) ②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 청구 등 보정과 더불어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50조3항 및 48조4항) ③ 50조1항2호. ④ 완성품에 관한 출원에 있어서 이를 부품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여 서로 상이한 디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할을 인정하게 되면 서로 상이한 객체에 대해 소급효가 인정되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계줄이 부착된 손목시계의 경우 이는 손목시계(완성품)에 관한 출원으로서 손목시계 본체(부품)와 시계줄(부품)로 각각 분리하여 분할할 수는 없다. ⑤ 예컨대, 출원(甲) 이후 출원인이 변경(乙)된 이후 분할출원(乙)이 있는 경우 최초 출원인(甲)과 분할출원인(乙)은 상이할 수 있다. 정답) ③

[ 출원공개 ]

28.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공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1회 기출]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는 후 출원공개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서면경고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출원공개할 수 없다.
- ③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다.
- ④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출원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특허청장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① 53조1항. ② 이러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③ 61조1호. ④ 53조2항 및 3항. ⑤ 52조2항단서. 정답) ②

[ 정보제공 ]

29. 디자인보호법상 정보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회 기출]

- ① 일부심사등록출원되고 출원공개가 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거절 이유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이라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그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심사관은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발송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 채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심사관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 이상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는 등록여부결정서를 발송할 때 한 차례만 통보할 수 있다.
- ⑤ 심사관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제출된 정보 및 증거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이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해설) ① 디자인보호법상 정보제공은 그 대상이 심사등록출원이든 일부심사등록출원이든 상관없이 가능하고, 출원공개 전이라도 가능하다. ② 제62조제4항 참조. ③④ 심사기준에 따르면, 정보 및 증거가 제공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발송할 때 정보제공자에게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의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 이상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출된 정보 및 증거의 채택여부는 등록여부결정서를 발송할 때 한 차례만 통보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보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⑤ 심사기준에 따르면, 심사관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 그 제출된 정보 및 증거가 이의신청 이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한다. 정답) ③

[ 우선심사 ]

30. 디자인보호법 제61조(우선심사)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선심사대상이 되는 출원이 아닌 것은? [61회 기출]

- ①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 ②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 ③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 ④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해설) 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4호. ③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9호는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우선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 당사국에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심사대상이 아니다. ④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2호. 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0호. 정답) ③

[ 비밀디자인 ]

[ 비밀디자인 ]

31. 다음은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40회 기출]

- ① 비밀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비밀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③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비밀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장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디자인보호법은 침해금지청구권 행사시 비밀디자인의 내용을 제시하여 사전경고를 해야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⑤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과실 추정이 배제된다.

해설) ① 비밀디자인은 일정기간동안 등록디자인을 공개하지 않는 제도일 뿐 존속기간의 기산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43조1항단서 참고. ③ 43조3항 참고. ④ 113조2항 참고. ⑤ 116조1항단서 참고. 정답) ①

32.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1회 기출]

-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 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서는 각 디자인마다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④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한 번 청구한 비밀기간은 연장 또는 단축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에 의하여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이 공개되기 이전에는 언제라도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43조1항단서 ② 43조1항. 출원일부터 3년이 아니라 설정등록일부터 3년이다. ③ 43조6항.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④ 13조4항 ⑤ 43조2항.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비밀디자인청구를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료가 면제된 때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는 때까지 할 수 있다. 정답) ③

[ 디자인권 ]

33. 디자인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4회 기출]

- ① 디자인권의 침해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 ②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이 디자인권의 침해로 되는 경우는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작권의 저작물과 외견상 동일한 등록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없다.
- ⑤ 한 별 물품의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그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의 물품에 대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① 116조2항 참고. ②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권의 침해로 간주된다.(114조 참고)  
③ 기존의 저작물과 외견상 동일한 등록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라면 선발생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즉, 95조 규정에 의한 저촉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원권리의 침해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등록디자인이 선발생 저작물과 외견상 동일하다 하더라도 모방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된 지분은 나머지 공유자에게 각 지분별로 분배된다. ⑤ 한 별 물품의 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한 별 물품 전체로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그 구성물품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별 물품의 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아닌 각 구성물품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정답) ③

34. 디자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2회 기출]

- ① 디자인권은 불실시에 의해 권리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 ②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0년까지이며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 ③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종속하므로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0년까지 존속하는 경우는 없다.
- ④ 무권리자의 등록에 대해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정당한 권리자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권의 디자인등록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⑤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5조(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①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의 실시를 강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이유로 특허법과 같이 실시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불실시에 의해 권리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 ② 91조1항 참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는다. ③ 91조1항단서. 관련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과 동일자에 출원된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0년까지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91조2항. ⑤ 선원디자인권과 후원디자인권의 저촉관계는 선후원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 간에서만 성립한다.(95조2항 참고) 따라서 후원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 자체가 선원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촉관계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 흠결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의 하자를 갖는 착오등록의 문제가 된다. 정답) ③

[ 이용·저촉관계 ]

35. 디자인보호법상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이용·저촉관계 규정(법 제95조)의 적용과 해석에 비추어 옳은 것은? [41회 기출]

- ① 디자인보호법 제95조의 규율을 받는 등록디자인의 이용관계 및 저촉관계는 선출원 디자인권은 물론 선출원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및 선발생 저작권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한다.
- ② 선출원이 형상만의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이에 색채와 모양을 결합한 디자인인 경우 어느 학설에 의해서도 이용관계가 인정된다.
- ③ 선출원이 각각 부품 또는 부분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각각 이를 포함한 완성품 또는 전체디자인인 경우에도 이용관계가 발생한다.
- ④ 선행권리와 이용·저촉 관계에 있는 등록디자인권자는 선출원 권리자 및 선발생 저작권자가 실시 동의를 하여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 ⑤ 선출원이 한 별 물품의 구성물품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별 물품디자인인 경우 신규성이나 선출원주의 위배로 거절되므로 이용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① 후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과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지만(95조2항), 후출원 등록디자인은 선출원 등록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저촉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95조1항). ②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이 대립되고 있다. ③ 선출원이 부품이고 후출원이 완성품인 경우 원칙적으로 양자는 상호간 비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완성품에 관한 후출원은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면 부품을 그대로 포함하는 관계가 되므로 이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후출원이 전체디자인인 경우에는 양자는 보호대상 및 보호방법이 상이하여 전체디자인에 관한 후출원은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체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실시는 부분디자인을 그대로 포함하는 관계가 되므로 이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④ 선발생 저작권자(선등록 상표권자 포함)에 대해서는 허락에 의해서만 실시를 할 수 있다.(95조3항) ⑤ 선출원이 구성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인 경우 상호간 비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신규성 흠결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지 아니하며 등록 이후에는 한 별의 물품의 디자인의 실시가 그 구성물품을 그대로 포함하게 되므로 이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 ]

36.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7회 기출]

- ①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1조)은 실시사업과 함께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 ②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디자인권자가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 범위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의 이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질권의 설정에 대한 동의권만을 가진다.
- ④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때에는 각 통상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및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자기의 통상실시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⑤ 전용실시권의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자기분의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설) ①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에 기한 통상실시권 이외의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하는 경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다(99조4항 참조). 따라서,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101조)은 실시사업과 함께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 ② 104조3항. 통상실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③ 97조3항 및 4항 참조. 디자인권자는 전 범위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이전,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질권의 설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지만, 이들에 대한 동의권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권자는 전 범위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④ 99조5항, 99조6항준용 96조2항 참조. 옳은 지문이다. ⑤ 이러한 제한은 없다. 전용실시권의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의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포기된 지분이 분배된다. 정답) ④

[ 이의신청제도 ]

37.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7회 기출]

-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 등이 게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보 발행일 후 3개월까지이다.
-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 ④ 특허청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비밀디자인청구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제3자는 실질적으로 비밀 기간이 경과되어 당해 디자인의 실질적인 내용(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설명 등)이 게재된 이후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비밀디자인청구된 일부심사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디자인의 설명 등이 게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보 발행일 후 3개월이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② 69조 참조.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③ 71조2항 참조.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④ 68조3항 참조. 특허청장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심사사무를 총괄하는 심사장이 부분 송달 및 답변서 제출 기회 부여의 주체이다. ⑤ 73조6항.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 ①

38.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45회 기출]

-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분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③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 ④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① 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각하결정 취소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해야 한다(124조 1항). ②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 그의 동의를 얻어 심판청구를 취하해야 하며, 그 이전에는 상대방의 동의없어도 취하할 수 있다(149조1항). ③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가 소멸된 것이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심결로서 각하될 것이다. ④ 지문의 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40조1항 위반의 하자를 갖지만, 40조1항은 형식적 요건이므로 등록 이후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므로 무효심판청구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121조1항 참고).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⑤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보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판관합의체에 의해 심결로서 각하될 것이다. 정답) ④

[ 헤이그 국제출원]

39.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회 기출]

- ①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경우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②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 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 디자인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 제177조제2항제1호. ② 제192조. ③ 제195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직권보정에 관한 규정(제66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제189조. ⑤ 제184조. 정답) ③

40.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5회 기출]

-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②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④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해설) ① 제199조제1항본문. '국제등록일부터'가 아니라 '설정등록된 날부터'이다. ② 제199조제1항 단서.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만료일"이라 한다)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설정등록된 날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만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므로,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다. ③ 제199조제2항.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④ 제201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⑤ 제200조.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른다. 정답) ②